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협정

1973년 파리협정 비교

**Comparis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1973 Paris Agreement**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웅웬김웅안

# **Comparis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1973 Paris Agreement**

A Thesis Presented

By

Nguyen Kim Ngan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ugust 2020

# 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협정

1973년 파리협정 비교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웅웬김웅안

웅웬김웅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08월

위원장 신성호 (인)

부위원장 Erik Mobrand (인)

위원 박태균 (인)



# **Comparis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1973 Paris Agreement**

Professor Park Tae Gyu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August 2020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Nguyen Kim Nga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Nguyen Kim Ngan

August 2020

Chair      Sheen Seong Ho (Seal)

Vice Chair    Erik Mobrand (Seal)

Examiner    Park Tae Gyun (Seal)



## <국문초록>

# 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협정

## 1973년 파리협정 비교

옹웬김옹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를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전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핵심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 정전협정, 평화협정, 분단, 통일.

학번: 2017-21359

#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 4 절 연구의 구성.....	11
제 2 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 1 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 2 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 3 장 한국정전협정.....	20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 2 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29
제 4 절 포로 송환.....	34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 4 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 2 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 4 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 5 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 2 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 4 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 6 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9

## 표 목차

[표 1]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비교.....	97
--------------------------------	----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평화협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 무력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정치적 성격을 지닌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up>1</sup> 한반도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흘렀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남북 상호간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중지된 지는 67년이 되어간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한국정전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전협정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 베트남의 1953년 제네바정전협정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 사례는 많은 점이 비슷하다.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또는 베트남 독립 전쟁 종결 후

---

<sup>1</sup>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p61-97.

베트남에서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남.북 베트남 관계가 긴장되고 결국 9년 후에 미국의 개입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야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리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어 1975년에 북베트남정부가 공격함으로써 남베트남정부가 몰락되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됐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실체인정, 신뢰구축, 제도마련, 이행기구 설치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이 담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1954년에 인도차이나 전쟁의 막을 내리기 위해 제네바정전협정이 조인되었고, 1973년 베트남에서의 평화를 모색하고자 파리협정이 이루어졌다.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향후 평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세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결국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실패 사례로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정전협정과 비교하기 위하여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한국전쟁은 냉전 초기에서 이데올로기가 대립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베트남전쟁은 탈냉전 초기의 잔여물로 여길 수 있다. 두 전쟁은 국가 범위에서 벗어나 세계를 뒤흔든 전쟁이었고 심지어 세계전을 초래할 뻔하였다. 한국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분단 해결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였고, 제네바협정은 베트남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분단 상태가 고착되었고,

파리평화협정은 명칭과 달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었다. 세 협정은 한반도와 베트남에서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진정한 평화를 원해서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전쟁의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협정을 이끌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을 불리한 상황으로 밀어놓기 위해 사용한 원칙, 적의 의중을 떠보면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는 전략, 협정에서 노출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위의 세 협정이 공통점이 많다. 무엇보다 당시 한국정전협정, 제네바정전협정, 파리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시기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검토하고, 협정을 사인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협정이 체결되었냐는 질문을 답하는 것이다.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지, 당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분석하는 목적이다.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전협정과 비슷한 점을 규명하고자 하며 향후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한국정전협정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관련된 연구는 김보영<sup>2</sup>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 휴전회담의 전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며, 양측의 협상전략과 협상주체 및 남북한의 지위문제, 전후 정전체제 구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협상의 주체의 문제, 회담 의제와 쟁점이 갖는 함의, 협상 자연과 전쟁 장기화의 원인, 휴전회담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박광득<sup>3</sup>은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정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며 남북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적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전협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제시하며, 유효성이 지속되는 조항을 발전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조항을 폐기하고 착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시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윤정인<sup>4</sup>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역사적 배경과 성립과정,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과 의의 및 정전협정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쟁점을 주목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북한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채<sup>5</sup>는 한국정전협정의 성격이

<sup>2</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up>3</sup> 박광득. 2014. 「제 4 장 정전협정 (1953)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14(2), p.97-133.

<sup>4</sup> 윤정인. 2017. 「1953년 정전협정」, 통일법연구 3, p35-75.

<sup>5</sup> 김승채. 1996. 「한반도 휴전 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평화연구 5. p127.143.

전쟁 자체에 대한 염증과 전쟁을 통한 전쟁원인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포기라고 주장하였다. 정전협정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송승종<sup>6</sup>의 연구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목적으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을 짚기도 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논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 관련 회담과 합의에 대해서는 정태욱<sup>7</sup>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정전협정, 제네바 회담, 유엔총회의 결의까지 소급하고, 북핵 위기의 북미 회담, 그리고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정전협정의 실패한 부분을 통해 향후 평화협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한반도 적대행위 재발 방지와 군사력 증강 방지라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가 보편적이다. 또는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측면에서만 연구하였다. 기준 연구는 한국군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여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군의 당사자 성격을 재조명한 것이다.

---

<sup>6</sup> 송승종. 2019.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학회, p.235-263.

<sup>7</sup> 정태욱. 2016.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 19(2).

분단 상태인 한반도에 시사점을 주는 목적으로 탈냉전 이후 전 세계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며 아일랜드, 보스니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베트남 등의 평화협정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윤덕민<sup>8</sup>은 평화협정과 관련한 남북한의 입장과 움직임을 정리하고 평화협정과 관련한 쟁점들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방안을 검토한 것 외에 베트남의 파리협정 사례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 사례는 부록에만 언급되고 협정의 조항들을 단순하게 요약하며 평가한 연구에 불과하였다. 세계의 평화협정에 대한 다른 대표적인 연구는 홍규덕<sup>9</sup>의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평화협정”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 협정 과정과 내용을 서술하여 체결된 평화협정의 불합리한 점을 보여주었다. 황수환<sup>10</sup>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사례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실질적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평화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협정의 체결에 따른 갈등 해결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적인 평화협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에는 모종린<sup>11</sup>의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Good Friday)’ 평화 협정” 라는 논문이 있다. 이 연구에서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 체결과정을 배경,

<sup>8</sup> 윤덕민. 2000.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sup>9</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sup>10</sup>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p61-97.

<sup>11</sup> 모종린. 2000. 「[특집] 보스니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사례연구-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Good Friday)” 평화협정」, 전략연구, p100-119.

경과, 형식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요인을 분석해서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인택<sup>12</sup>은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가상할 때 주요 쟁점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고, 이를 위해 세계의 몇 개의 평화체제 수립 사례에 대해 연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 포함되거나 피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세계 각국의 평화체제 사례 중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도 언급되어 베트남 통일의 경우를 통해 한반도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1973년 파리협정 당시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비교하여 지금 미국이 철군 명분을 찾지 않은 점, 한반도는 전쟁상태나 심각한 분쟁상태가 아닌 점, 한국의 현재 위상, 그리고 한미관계와 당시의 남베트남과 미국 관계는 매우 다른 점 등으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1973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던 베트남 상황과 수십 년이 지난 후 현재 한반도 상황이 역시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신범철<sup>13</sup>은 탈냉전 이후의 주요 평화협정 및 유사 사례<sup>14</sup>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

<sup>12</sup> 현인택. 2003.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 세계의 평화협정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1」, 전략연구, p.120-139.

<sup>13</sup> 신범철. 2017.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원.

<sup>14</sup> 독일문제의 최종 종결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1900), 결프전 종전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8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 캄보디아 평화협정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1991), 이스라엘 – 요르단 평화조약 (Israel – Jordan Treaty of Peace, 1994),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1995),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 1998), 코소보 평화협정 (Military Technia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and the Governments of the Federe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1999).

지적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완결된 모습의 것으로 만드는 데 시사점을 가져다주었다. 세계의 평화협정 사례들이 준 교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까지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화협정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기존 연구에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네바협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협정을 생산한 과정에 주목한다. 소련과 중국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네바협정을 합의하는 데에 베트남에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와 중국 자료에 따라 프랑스와 중국 학자들은 당시 소련과 중국의 입장이 제네바회담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sup>15</sup> 중국정부가 호치민정부에 압력을 가한 것은 순전히 그 나름의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첫째는 1953년부터 고려하고 있던 경제 5개년계획과 타이완 “해방”에 대한 관심이었다. 둘째는 인도차이나전쟁이 계속되는 경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우려해서였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국경 가까이에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셋째는 제네바회담에서 평화공존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 영국 및 여타 서방 국가들과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소련은 유럽방위공동체 가입을 미루고 있는 프랑스를 지지함으로써 유럽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호치민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sup>16</sup> 다른 한편으로 당시 북베트남이 소련과 중국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

<sup>15</sup> Pierre Asselin.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11:2, p156.

<sup>16</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370.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에르 아셀린(Pierre Asselin)에 따르면 중국과 소련의 압력이 없었더라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전력이 많이 소모되었던 북베트남에 정전협정이 필요하였고, 제네바협정보다 북베트남에 더 유리한 협정이 없었다고 한다. 피에르 아셀린의 연구는 북베트남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인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남베트남의 공산자가 처음부터 협정에 대해 반대하여 미국과 프랑스 또한 반공세력들이 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의심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sup>17</sup>

베트남 학계에서는 제네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외교적 투쟁의 대단한 승리라고 교조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1986년이 되어서야 개혁개방 정책(Đổi Mới)을 취할 때부터 공산당의 자료를 발굴하기 시작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1986년 이후 연구 중에 부쓰엉닝(Vũ Dương Ninh)<sup>18</sup>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당시 공산당이 제네바협정을 받아들였던 이유를 재검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과 소련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정을 체결한 것은 베트남에게는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외교적인 큰 승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주로 미국과 북베트남이 협상을 흥정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빨리 빼고 싶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

<sup>17</sup> Pierre Asselin.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11:2, p.155-195.

<sup>18</sup> Vũ Dương Ninh. 2004. “Hiệp định Geneva: Một nắc thang trên tiên trình giải phóng dân tộc”, Nghiên cứu lịch sử, No.338, 2004. 부쓰엉닝. 2004. 「제네바협정: 민족해방과정에 한 단계」, 역사연구, 338 호, 2004.

제안하였다고 보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학계의 파리협정에 관한 연구는 역시 항미전쟁에서의 외교적 승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남베트남을 해방하는 데에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하는 틀에 박혀 있다. 베트남 제 2 국립자료센터가 발행한 “1975년 봄의 대승: 사이공정권의 사료 중심으로”<sup>19</sup>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파리협정이 체결된 1973년부터 베트남이 통일된 1975년까지 베트남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이공정부의 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파리협정에 대한 사이공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사이공정부가 파리평화협정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면서 파리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기반으로 1975년 베트남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정전협정을 다른 국가의 정전협정 조항들과 자세히 비교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정전협정과 다른 국가의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 또는 궁극적으로 각 협정의 체결 목적을 검토하는 연구가 흔하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협정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각 협정의 조항을 살펴보고 협정들의 성격을 파악할 목적이다. 특히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당시 한반도와 베트남 상황에 적절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sup>19</sup> Bộ Nội Vụ,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2010. “Về đại thắng mùa xuân 1975 qua tài liệu của chính quyền Sài Gòn”, NXB Chính trị quốc gia Hà Nội, 2010. 내무부 제2 국립자료센터, 『1975년 봄의 대승: 사이공정권의 사료 중심으로』, 하노이 국가정치 출판사.

###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자료를 질적분석하는 방식이다. 즉 본 논문은 한국의 자료, 베트남의 자료 등을 활용해서 분석할 것이다.

제네바협정 및 파리협정과 관련된 자료는 베트남 제 2, 3 국립자료센터에서 발굴해 분석할 것이다. 베트남 제 2 국립자료센터는 베트남공화국(SOVN)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FL)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다. 제3국립자료센터는 북베트남에서 베트남의 중부에 위치한 꽡빙성까지를 관할하며, 베트남민주공화국(1945-1975년)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 외에 제네바협정이 체결된 때부터 파리협정이 체결된 때까지 발행된 베트남의 일반적인 신문 자료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남과 북베트남의 각 협정에 대한 인식, 협정 후 남과 북베트남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전협정과 관련된 자료는 단행본, 논문 등을 활용할 것이다. 두 국립자료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베트남 자료와 신문, 한국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정전협정과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의 각 조항을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 **제 4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 장에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3 장, 4 장, 5 장에서 한국전정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평화협정의 각 조항을 서술하면서 비교할 것이다. 각 협정을 서술할 때 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체결기간, 협정의 당사자, 적대행위 및 병력 철수, 포로 송환,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6 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전쟁종결과 적대행위 종료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법학자 딘스타인(Yoram Dinstein)은 전쟁종결 방식을 평화조약, 정전협정, 기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방식에는 묵시적 선호동의, 완전정복, 일방적 선언이 포함된다. 적대행위 중단의 형태도 휴전(truce), 정화(cease-fire), 정전(armistice)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 “정전”은 적대행위의 중단을 넘어 종결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20</sup>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군사적 목적으로 분쟁을 멈추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휴전에도 불구하고, 외교관계의 설정 혹은 재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경선(정전분계선)은 폐쇄된 채로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거 교전국 간에는 긴장관계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분쟁의 무력적 단계는 지나갔지만, 분쟁 자체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sup>21</sup> 평화협정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들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평화협정은 전쟁 및 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침조약과 구별되며 정전, 휴전협정과 구별할 수 있다.<sup>22</sup>

---

<sup>20</sup> 송승종. 2019.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학회, p241.

<sup>21</sup> 문광건. 2000. 「한반도 정전협정의 본질과 평화조약의 필요성」, p100.

<sup>22</sup>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p66.

정전(停戰, armistice)은 교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군사작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뜻한다. 미국의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에서는 정전을 부분적 또는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양당사자가 합의한 한도까지의 군사작전의 정지일 뿐이라고 명시한다. 한편 휴전(休戰, truce)은 교전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정전과는 달리, 국제연합의 관행에 따라 국제연합 기관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당사자 간의 교섭 결과로 적대행위가 종지되는 경우를 말한다.<sup>23</sup> 휴전과 정전의 근본적 차이점을 구분해 보면, 휴전이란 교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군사작전의 정지이나, 정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국제연합의 중재에 의해 당사자간의 교섭의 결과로 적대행위가 종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면 문성묵에 따르면 1953년 7월에 체결된 한국전쟁에 관하여 휴전(truce)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한다.<sup>24</sup>

다른 한편으로 한국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의 공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로 국제연합의 관행에 따른 truce(휴전)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인 armistice(정전)이 사용되었다.<sup>25</sup> 국제법적으로

---

<sup>23</sup> U.S. Department of Army, The Law of Land Warfar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ara. 479; , 1994, pp.15-16, 이보미 재인용.

<sup>24</sup> 문성묵. 2011.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통일부. p12.

<sup>25</sup> 김명기, 1994;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합의”, 이보미 재인용.

볼 때 정전협정은 “적대적 행위의 종식”에 대하여 휴전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휴전의 경우 단순히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는 의미뿐이지만, 정전협정은 그 직후 평화협정과 같은 정치적 선언을 통하여 전쟁을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종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왔던 것이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적대적 진영 사이에서 기간과 지역을 한정하여 정식 협정문서에 서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휴전은 특별한 협정이 없어도 선언될 수 있고, 반드시 협정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1953년 조인된 한국정전협정에서 “최후의 평화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에 해당된다.<sup>26</sup> 제네바협정은 만료기한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종료하고 총선거 실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정전협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및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정전협정(armistice)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된 1년 뒤 1954년 7월에 제네바에서 인도차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인된 제네바협정도 정전으로 표기할 것이다.

---

<sup>26</sup>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p180.

## 제 2 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평화협정은 부차적인 의정서나 이행 합의서를 제외한 둘 혹은 그 이상의 분쟁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27</sup> 이는 좁은 의미에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문서만으로 정의하여 평화의 과정에서 체결되는 각종 의정서나 협약서 등의 합의문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UCDP(Th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는 평화협정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전국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그 내용에는 당사국 간이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과 과정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는 평화협정의 개념을 단순히 분쟁의 종결이라는 결과가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다. 평화를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하나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분쟁이 종결된다기보다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수많은 협정이 평화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분쟁 당사자 간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되는 갈등보다 조화롭고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협상으로 본다면, 이러한 협상의 과정 속에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화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체결되는 합의문들이 평화협정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1973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평화협정의 좁은 의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sup>27</sup> Leslie Vinjamuri and Aaron P. Boesenecker, "Accountability and Peace Agreements Mapping Trends from 1980 to 2006" (Geneva: 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 in Geneva, 2007), p. 5. 황수환 재인용.

<sup>28</sup>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1(2), p65.

평화상태로의 돌입을 위한 환경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문서상의 서명으로 체결된 평화협정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수불가결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하여 유럽에서는 1945년 5월 7일 군사지휘관들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지만, 이후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없었다고 해서 유럽의 평화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평화조약을 체결한 아시아지역보다 더욱 평화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유럽에서는 평화조약을 통한 전쟁의 종결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이나 2003년의 이라크전쟁의 종결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 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탈냉전기에 타결된 평화협정 사례들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평화협정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측면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전협정을 예비적 평화조약으로 인식하거나 승전국에 의한 일방적인 선언도 전쟁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sup>29</sup>

평화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국제법 차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유무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등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화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안정된 평화(stable peace)”가 있고, 이에 비하여 전쟁 가능성은 높으나 힘의 억제와

---

<sup>29</sup> 박희락. 2018.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연구 25(2), p174-175.

합의된 규제 타결 등을 통하여 전쟁의 발발이 예방되어 있는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가 있다.<sup>30</sup> 전자는 세력균형이나 휴전, 불가침협정, 군비통제 등과 같은 공식, 비공식 제도를 통해 적대관계가 현실화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을 탈피하고, 정체성 및 이해관계 우호적인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항구적인 평화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문정인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군축, 그리고 평화협정 등 3가지 평화체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군축, 평화협정과 같은 일련의 명시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뢰구축은 긴장완화의 필수적 요건이며, 신뢰구축의 경로를 거쳐야만 현상유지와 전략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의 명시적 징표로서의 군축 또는 무장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협정 또는 강화조약은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무장해제 등을 선별적 또는 총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32</sup>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체제임과 동시에 추가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쟁억제체제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였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평화를 끝낸 평화”(a peace to end all peace)라고 평가된 것처럼 아무리 정교한 체제라 해도 전쟁을 유발하면 실패한 평화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

<sup>30</sup>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p14.

<sup>31</sup> 최영종, 2007.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12 (1), p8.

<sup>32</sup> 문정인. 1999.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결국 평화체제는 평화 즉 “전쟁의 부재”라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제도, 구조, 장치, 방안을 통칭한다고 할 것이다.<sup>33</sup> 평화협정은 회복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약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단계로만 볼 수 있으며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평화체제가 평화협정 형태로 존재하려면 평화협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둘째로,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셋째로 참가자가 현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 외적 팽창을 통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국가가 있다면 협력을 생길 수 없다. 넷째로, 전쟁이나 무력행사에 커다란 비용이 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은 대체로 평화체제의 구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이렇게 볼 때 평화협정이 평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화협정이라는 문서가 그 자체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체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의 승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을 경우 평화협정은 침략을 위한 기만책일 가능성이 높다.

---

<sup>33</sup> 박휘락. 2018.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연구 25(2), p173.

<sup>34</sup> 최영종, 2007.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12 (1), p9-10.

## 제3장 한국정전협정

제 2 차 대전 종결 앞둔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었다.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으면서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다음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50년 6월에 전쟁이 발발하고 북에서는 중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군사력을 지원하고 남에서는 유엔이 대한민국에 지원하였다. 6.25 전쟁 정전협정은 1951년 7월 27일 개성 북쪽에서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널문리(板門店)로 장소를 이동하여 진행된 긴 정전회담의 결과였다.<sup>35</sup> 교전 쌍방의 군사령관들 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에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부칙 등 모두 5개조 63개항, 부록과 임시적 보충협정이 포함되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하기 위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야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제시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과 북 그리고 6.25 전쟁 참전국으로 남측의 15개국, 북측의 중국과 소련이 추가되어

---

<sup>35</sup>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p107.

19 개국이 이 회담에 참가하였다.<sup>36</sup> 남과 북이 첨예한 대립으로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 채 정치회담이 종결되었다.

##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정전협정은 1951년 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협상이 지속되었다. 휴전협정 체결까지 159회 본 회담, 179회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 참모장교 회담, 238회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회의 회담을 거쳐 2년 17일간 각종 회담의 결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sup>37</sup> 1951년 6월 5차 전역 종료 후 공산진영과 유엔군 양측은 정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래 1950년 12월 초 중국의 6.25 전쟁 개입으로 유엔군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게 되자 유엔은 정전문제를 논의하였다.<sup>38</sup> 1950년 12월 7일 인도 등 13개국이 며칠 내로 유엔안보리에 먼저 38 도선에서 전투를 정지하고 정전협상을 진행하는 건의를 제출할 것이라고 중국 측에 알려주었다. 이때 중국은 만약 정전을 한다면 정전조건을 제시할 계획을 준비해 놓았는데 소련은 정전보다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38 선 이남과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공격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유엔과 미국 측이 먼저 정전조건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1950년 12월 9일 중국 측은 유엔에 5개 정전조건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sup>36</sup> 정태옥. 2016.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 19(2). p250.

<sup>37</sup> 이영진 . 노동영. 2015. 「한국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학연구, 30 June 2015, Vol.26(1), p8.

<sup>38</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65.

12월 21일 방송을 통해 유엔의 회담 제의를 거부하였다. 휴전을 거부하면서 중국이 내놓은 대안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교섭의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외국군 즉시 철수, 한국인 자신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 미군의 대만 철수, 유엔에서 중국대표의 합법적 지위 승인 등을 요구하였다. 정전 3 인위원회는 중국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협상안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1951년 1월 17일 이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1월 17일 유엔의 제안을 역시 거부하였고 결국 휴전 논의는 중단되었다. 1951년 1월말 군사상황의 변화로 전선이 안정화되자 미국은 외교적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장 변화로 미국은 1950년 12월의 상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신들의 조건에 기초한 휴전을 모색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5월 31일 미국의 전 소련 대사인 케난(G. F. Kennan)이 유엔 주재 소련 대표인 말리크(Jacob Malik)를 만나 6.25 전쟁을 종결짓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미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상황이 지연되면서 전쟁에 참여한 인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다. 1951년 5월까지 피해자는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쟁이 계속되면 미군 사상자가 증가할 전망이 보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이 확산되어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sup>39</sup>

협상 첫날부터 양측의 군사분계선 논쟁과 회담 장소로 인해 두 개월 정도 협상이 중단되었다. 공산측은 1951년 6월 초부터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제시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면서 군사분계선이 전투상황에

---

<sup>39</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6-33.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66-170.

의거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전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휴전 성립 시까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확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때 유엔군 측은 당시 점령하고 있던 전선의 위치보다 30 ~ 50km 북쪽에 분계선이 표시된 군사지도를 공산군 측에게 제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개성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었고, 다시 회담이 재개되면서 회담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이전되었다.<sup>40</sup>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양측은 정전협정을 협상하면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유엔군 측은 회담이 지연되면, 정전 체결 시까지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38 도선 재돌파 문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1951년 2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38 도선 재돌파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무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38 도선 재돌파와, 더 나아가 평양과 원산 선에서 방어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전투행위 종식과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휴전협정을 제의하되 휴전 성립 시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였다.<sup>41</sup> 이 기간에 미국은 한반도의 북부에 끊임없이 폭격을 가하였다. 38 선 부근에 형성된 전선에서는 고지전이 계속되었다. 또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판문점 근처에도 폭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지연되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군사적 압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1951년 11월 27일 가조인한 군사분계선 협정문

<sup>40</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1-74.

<sup>41</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1.

초안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조항이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양측이 군사분계선을 확정하였지만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sup>42</sup>

그 외에 정전회담이 지연된 이유는 포로문제였다. 유엔 측은 포로 자신의 자유선택에 의한 송환과 1:1 교환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유엔의 제안을 반대하였다. 당시 공산포로 132,474 명 중 7 천 명만이 송환을 원하며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명부에 있던 20,700 명의 포로 중 단지 5,100 명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환을 희망하는 자가 명부보다 적으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중국의 정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1:1 교환원칙을 반대하며 전원송환을 주장하였다.<sup>43</sup> 당시 양측의 포로 숫자의 불균형과 출신성분 등으로 인해 포로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중국은 포로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다른 의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포로문제였고, 그 때문에 회담은 무려 1년 이상 지연되었다.<sup>44</sup>

## 제 2 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한국정전협정에 사인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중국군 사령관이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만남에서 한국전쟁 교전당사국의 군사대표가 군사문제에

<sup>42</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초기 ‘개성사건’과 군사분계선 협상」, 군사, (67), p330.

<sup>43</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76.

<sup>44</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5.

국한하여 휴전을 결정하며, 정치나 영토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45</sup> 전문에 있듯이 이 협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의 협정이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합의했을 뿐 “최후의 평화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군사령관들이 사인을 했던 것이다.<sup>46</sup>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하여 협정이 조인된 후 3 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제네바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이후 더 이상의 정치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sup>47</sup>

정전문제 논의가 시작되자 북한과 중국은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주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련은 6.25 전쟁의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협정 서명 문제에 대해 소련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데화이의 명의로 할 것을 지시하면서 총지휘권을 마오쩌둥에게 위임하였다.<sup>48</sup> 6.25 전쟁의 직접적 개입을 회피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은 정전협상의 실질적 지도는 중국에 맡김으로써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오는 책임과 부담은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수석대표와 수석연락관을 북한이 맡고, 협정의 대표단 인원 중에 중국보다 북한이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공산 측에 북한이 주도해간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중국이 회담 전략을 수립하며 실질적으로

<sup>45</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7.

<sup>46</sup>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p175-176.

<sup>47</sup>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p4.

<sup>48</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70.

모든 협상 상황을 주도하였다. 북한 측 남일이 협상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는다고 해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휴전회담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행사하며 협상 사항들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았다.<sup>49</sup>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정전협상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공개적으로 정전을 반대하였음에 불구하고 미국은 무시하고 한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유엔군 측 휴전회담 구성과 임명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였다.<sup>50</sup> 정전협정을 반대하면서 1953년 8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의 지원 없어도 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다가 1953년 9월 30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시 정치회담에서 협의의 성과를 내리지 못할 경우 통일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심지어 8월 15일 독립기념일 축사 발표 시 정치회담의 성과를 이끌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기 50일 전 1954년 3월 11일에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진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미국에 무기 및 탄약 등을 요구한다고 명기하였다.<sup>51</sup>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으로 보장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의심하고 협정으로 평화를 만드는 선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제네바 회담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제네바 회담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남한은 제네바 회담에

<sup>49</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7.

<sup>50</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9-55.

<sup>51</sup> Park Tae Gyun. 2014. "What Happened Sixty Years Ago?: ROK-US Deep Distrust between President Rhee and Eisenhower", Volume 21, Number 1, 2014, p48-49.

대하여 별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승만은 정치회담 개최를 강렬히 반대하였고, 만일 정치회담이 정전조약에 명시된 대로 3개월 이내에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1954년 제네바 회담 후 남북한 간의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이유 중에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네바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미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참전국들과 한국이 함께 참가하여 공산군 측(북한, 중국, 소련)과 협상을 벌였다. 이때 공산측은 한국의 당사자적 성격에 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제네바정치회담을 진행했다. 또한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한국군에서도 임선하 육군소장, 김창규 공군소장 등의 순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한바, 중국과 북한 대표들은 이들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sup>53</sup>

북한이 한국을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974년부터였다. 고유환<sup>54</sup>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북한이 1955년부터 1974년까지는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고,

---

<sup>52</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90-191.

<sup>53</sup>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p114

<sup>54</sup> 고유환. 1997.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 미협정」, 곽태환 외 지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7

1974년부터 1983년까지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6년까지는 북미평화협정과 남북불가침선언을 분리해 제안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제안 형식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제안 대상은 1974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변화한 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53년에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에 한국의 당사자 서명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은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평화협정 제안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10월 유엔 비망록에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부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1972년에 김일성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국 평화협정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1984년에 평화협정 의제가 포함된 다자회담에 한국을 포함할 때에도 한국은 불가침조약의 체결 당사자로 분리하였고, 주된 초점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있었다.<sup>55</sup> 북한은 1973년 파리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는데 북베트남이 미국과 직접 협상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북한 역시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도모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당시 한국정부가 정전협정에 사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도발하겠다고 판단하면서 정전협정을 체결해도 전쟁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대해 반대하였다.<sup>56</sup> 한국협정 체결 이전 미국으로부터 휴전협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상호 조약 체결을 약속을 받았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

<sup>55</sup>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p3.

<sup>56</sup>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p118.

한국이 공격받는 경우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반영되진 못했으나 미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미군이 공격받는 경우 의회의 비준 없이도 중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국의 자동개입에 준하는 조약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가는 것이었고 정전협정이 맺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7</sup>

###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적대행위 중단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정전협정 12 조에 따라 양측은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항에 따르면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 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륙에서 38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게 되었지만 해상 경계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남북한 서로 보복공격, 서해교전,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한 정부는 이 사고가 북한의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징”과 “보복”的 필요성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보복행위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적 견해마저 도출되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까지 천안함 사건과 자신들이 관계없다고 하면서 남한의

---

<sup>57</sup> 박태균. 2015.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창비. p136.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8</sup>

외국인 철수 문제는 한국정전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유엔 측은 외국군 철수가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정전이 성립된 이후에 토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유엔 측은 외국군 철군 문제를 정치문제로 규정하면서 군사에 국한되는 정전회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향후 고위급에서 처리해야 할 정치문제라는 논리였다. 공산 측은 외국군 철수 문제는 정전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951년 7월 17일 마오쩌둥은 개성의 협상대표단에게 외국군 철군문제가 군사문제 혹은 정치문제에 속하는지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만약 유엔군 측이 휴전발효 직후 외국군 철수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sup>59</sup> 결국 정전협정의 60조에 “3개월 이내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명시되었을 뿐이었다. 높은 정치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군 철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1954년 4월 29일 제네바회의에서 북한의 외교부장관 남일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선거로 평화통일문제를 심의하자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1956년 11월 7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는 남북한 당국 간 군비축소 회담을 제의하였다.<sup>60</sup> 1958년 2월 5일과 7일에는 북한과 중국에서 특별성명이

<sup>58</sup>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p4-5.

<sup>59</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6-67.

<sup>60</sup> Do Thanh Thao Mien. 2019.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2.

발표되었다. 중국군이 북에서 곧 철군할 것이며,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 철수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유엔군으로 참여한 국가들 입장을 대표하여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유엔군을 남한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하였다.<sup>61</sup> 중국군은 1958년 2월 19일에 북한에서의 철수를 공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사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4자회담(남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의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4자회담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인해 1999년 8월 중단되었다.<sup>62</sup> 현재까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림돌이 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그 협정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담아야 할 내용을 담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한편 협정안의 일부가 무효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13조(근)항은 1957년 유엔군 사령관에 의하여 무효화되었고, 1958년 초 남한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처음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13조(근)항은 정전 체제 내에서 외부로부터 한반도 내로 더 발전된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무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같은 성능의 무기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무기가 들어오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sup>63</sup>

<sup>61</sup> 박태균. 2003. 「[특집/정전협정 50년, 불안한 평화]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p41-42.

<sup>62</sup>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p188-189.

<sup>63</sup> 박태균. 2003. 「[특집/정전협정 50년, 불안한 평화]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p40~56;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p183 참조.

13 조 (근)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 43 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1954년 2월 11일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sup>64</sup>에서 항공기의 북한 반입을 조사 보고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월남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300 대의 미그기가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되었고, 3,000 여 명의 소련군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히 “휴전협정”의 조항, 특히 13 항(근)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65</sup> 1955년 4월 2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군사령관 헐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강조하였다. 소련군이 공공연하게 항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에 새로운 무기들을 반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13 항(근)목이 더 오래 유지되면 될수록 미국에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1955년 6월 워싱턴을 방문한 정일권 참모총장은

---

<sup>64</sup> 중립국 감독위원회(中立國監督委員會,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는 한국 전쟁 휴전 이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수립된 단체이다. 현재 대한민국 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이 5명씩 주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는 어느 국가의 위원도 주재하지 않고 있다.

<sup>65</sup> 박태균. 2003. 「[특집/정전협정 50년, 불안한 평화]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p46.

당시 주미한국대사관 무관이었던 이후락과 함께 국무부를 방문하여 조중연합군측이 비행기, 탱크, 화염방사기 등 5 가지 부분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1957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 “더 근대적이고 더 효과적인” 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월슨 국방장관은 새로운 무기는 유도미사일과 같은 “이중 성능”을 가진 무기라고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리젠퍼그(H.L.Litzenberg) 장군은 조중연합군측이 지속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한 협정 13 항(款)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조중연합군측이 협정을 지킬 의지를 보일 때까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선언하였다.<sup>66</sup> 정전협정 13 항(款)목이 폐기된 데에 당시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취했던 “뉴룩(New Look)” 정책은 중요한 기제로 작용되었다. 1953년에 시작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뉴룩” 정책의 가치하에 미 행정부의 재정축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외원조 감축, 즉 한국군 감축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병력감축을 추천할 수 없었다.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병력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새로운 무기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13 조 d 항을 폐기해야 되었다. 1957년 6월 21일 중국은 유엔군이 정전협정 제 13 조항의 규정을 폐기하고 한국에 무기를 반입한다고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은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

<sup>66</sup> 박태균. 2003. 「[특집/정전협정 50년, 불안한 평화]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통하여 전시에 군사 및 기타 원조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sup>67</sup>

## 제 4 절 포로 송환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1949년 8월 12일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들은 무조건 송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 협약의 서명국이었으며, 북한은 전쟁 발발 직후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양측은 모두 포로협상의 기준 전제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포로 송환 원칙의 대립으로 인해 정전협상이 지연되었다. 송환 과정에서 유엔군은 포로교환의 원칙을 “자원송환규칙(voluntary repatriation)으로 제시하였다. “자원송환원칙 혹은 비강제적 송환(non-forced repatriation)원칙”은 1951년 7월 5일 미 육군 심리전 참모 맥클루러(Robert A McClure) 준장이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공산군 포로 가운데 일부는 송환될 경우 가혹한 탄압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전원 송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원칙을 제기하였다. 북한 측은 포로를 전원 송환할 것을 내세우며 “자원송환원칙”에 극구 반대하였다. 북한 측의 반발로 휴전 협상이 지연될 점을 우려하여 군부 지도자들도 자원송환원칙을 반대하였다.<sup>68</sup>

---

<sup>67</sup> 윤정인. 2017. 「1953년 정전협정」, 통일법연구 3, p52.

<sup>68</sup>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2), p53.

제네바협의 제 118 조의 “포로는 종전 후 지체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1:1 송환과 자원 송환 원칙을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쌍방의 포로 수가 크게 차이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초에 국무부는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가 15만 명에 이르는 데 비해 공산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는 1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들을 그대로 송환하면 북한군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증원되어서 당시의 군사적 상황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69</sup> 이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전쟁 재발발 가능성은 우려하였고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정전협정을 지킬 호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엔군이 억류하고 있던 공산포로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1951년 12월 18일 포로 명단 교환에서 유엔군 측이 제시한 포로는 132,373명이었다. 그중에 송환을 거부한 포로가 있었고 1952년 초에 국무부는 중국군 포로를 포함하면 송환을 거부한 포로가 총 15,900명 정도로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출신은 원래 포로명부에 있던 20,700명의 포로 중 단지 5,100명만 귀환을 원하였다. 1952년 4월 4일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과 중국 포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심사와 분리 계획을 승인하였고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포로 심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포로 심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아직 완료도 되지 않았으나 4월 19일에 결과를 북한 측에 통보하였다. 북한 측이 포로 명단의

---

<sup>69</sup>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자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2).

132,373 명과 송환될 규모인 116,000 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여 협상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포로 심사 결과가 이승만이 포로 송환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이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면서 10 만 명의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려는 것이 정전 협상에서 장애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공산 측은 포로 송환 심사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유엔군은 양측의 군사위원회가 참석하는 가운데 국제적 중립 기구, 중립국 혹은 국제적십자사 합동 팀에 의해 재심사하자고 하였으나 1952년 6월 15일 휴전회담에서 공산 측 대표 남일은 포로들이 분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공동 재분류에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분류 그 자체가 바로 불공평한 것이며 1949년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1</sup> 포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모든 한국인 포로는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곧 석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려서 한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전체 포로를 송환한다는 규정이었지만 송환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당시 포로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당시 포로문제에서 핵심쟁점은 외형적으로 포로송환원칙이었지만, 내용적으로 송환자들의 숫자이었고, 궁극적으로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 국가의 패배를 의미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정통성이 약화될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서 매일 300 ~ 400 명의 심각한 인명손실을 입은 북한은 가능한 한 빨리 담판을 짓고

<sup>70</sup>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2), p58.

<sup>71</sup>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2), p60.

싶었기 때문에 포로문제에서 양보하는 의도이었고, 전쟁포로 문제가 계속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sup>72</sup>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포로문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정치적인 문제이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고 소련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포로문제로 인해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이 지연되는 동안 결국 양측은 군사작전을 재개해버렸다.

##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한국정전협정의 제2조(나)항목에 따라 설립된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다. 제2조(다)항목에 따르면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13c, 13d, 28조항을 감독, 감시, 시찰하고 이러한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2 조 정화 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 나. 군사정전위원회

##### 1. 구성

제 20 조 군사정전위원회는 10 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 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 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 명 중에서 각방의 3 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 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

##### 2. 책임과 권한

---

<sup>72</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76-177.

**제 24 조**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 1. 구성

**제 37 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 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 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 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 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 2. 책임과 권한

**제 41 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 13 항 ㄷ목, 제 13 항 ㄹ목 및 제 28 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정전 협정에 따르면 군사정전위원회는 각각 5 명의 공산군과 유엔군 대표로 이루어지며, 쌍방에 의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집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55년 1월 21일 정전위원회에서 대표단 인원을 중국인에서 북한사람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장수천(지원군 제 46 군 정치위원 대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전위원회 대표단을 북한 측 인사로 교체하였다.<sup>73</sup>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간의 충돌을 다룰 수 없었다. 심지어 군사정전위원회 대표의 교체를 계기로 해서 북한은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대표를 철수시켰다. 대표단의 철수는 중국군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내 중국대표 철수 직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새로 설치했다. 이후 장성급 회담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회담에는 미국·영국·한국 등에서 장성 4명, 북한에서 장성 3명이 참석해 군사충돌 등의 현안을 다룬다. 장성급 회담이 열린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대표가 철수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0년 11월 호주와 영국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엔군 측의 합의 사항 위반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4</sup>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무기 투입 감사활동이 1957년에 정지되었다.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각각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키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양국이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취해진 조치였다.<sup>75</sup>

결국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로는 정전협정이 지켜지지 못했다. 1953년 조인된 정전협정의 기구들의 권한 및 책임이 무효화되었다. 이는 전체 조항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두 조항이 양측 사이의 적대행위를 막고, 문제가

---

<sup>73</sup>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p192.

<sup>74</sup>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p6-7.

<sup>75</sup>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국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정전협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다루는 최고위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정전체제 하에 있는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sup>76</sup>

## 소결

1953년 군사작전을 정지하기 위해 맺은 정전협정은 총 63 개항 가운데 32 개항이 기능정지 및 미준수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집계한 결과(1953.7.27. ~ 1994.4.30.), 무려 42 만 5271 건으로, 육상에서의 위반건수는 42 만 5057 건(99.9%), 해상과 공중을 통한 위반건수는 각각 104 건, 110 건으로 기록되었다. 반면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같은 기간 남측의 협정 위반건수는 83 만 5563 건이라고 하였다.<sup>77</sup> 결국은 정전협정이 이뤄졌는데도 양측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군사분계선, 회담장소, 포로 송환 문제 등으로 인해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협상을 하다가 회담이 결렬되기도 하였다. 정전협정은 첫 회의가 개최될 때부터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계속 벌였고 희생자가 늘었다.

---

<sup>76</sup>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sup>77</sup> 조성렬. 2010.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JPI 정책포럼, 2010:4.

유엔군은 주로 공중 폭격으로 공산군은 지상전선에서 “전술반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때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며 한국전쟁이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 된 이후 더 이상 남북한은 전쟁의 주체가 아니었다. 전쟁의 한 부분이었던 정전회담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보조적 위치에 머물거나 아예 배제당하였다.<sup>78</sup> 한국은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최종 협정이 서명될 때까지 행사력과 결정권이 없었다. 한국은 정전협정에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은 1974년까지 남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다가 1974년부터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1973년 북베트남이 미국과 파리협정을 직접 체결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외국군 철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빌미로 유엔군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철군을 거부하였다.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정전협정에 명시하였으나 제네바회의 후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다는 문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감시하고 지키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간의 충돌을 다룰 수 없었다. 심지어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교체를 계기로 해서 북한은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대표를 철수시켰다.

---

<sup>78</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7.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결국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로는 정전협정이 지켜지지 못하였다.

요컨대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공산 측과 유엔 측은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고자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양측이 피해를 입으면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다시 진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반전운동이 격화되자, 특히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였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혁명 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었다. 북한도 전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으며,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으니 부득이하게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향후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맺었던 것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촉구하였다는 것이다.

## 제 4 장 1954 년 제네바협정

제 2 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는 한반도와 다른 운명을 걸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이 1940년 이후 점령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패전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떠나야 하였고, 그 지역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였다. 문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곧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곧 해방되었지만, 원래 유럽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시 복귀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는 달리 1945년 이후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구제국주의 국가였던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립전쟁을 치러야 하였다.<sup>79</sup>

1954년 프랑스와의 디엔비엔푸(Diên Biên Phủ) 전투에서 북베트남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프랑스는 철수하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식민권력을 미국에 이양하고자 하였다.<sup>80</sup> 제네바 회의는 1954년 4월 26일부터 1954년 7월 2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평화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떠한 선언이나 제안도 채택하지 않은 채 종결되었고, 인도차이나 문제를 논의하며 베트남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17선 위의 북부 지역은 호치민이 내세운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N)이 관리하고 17선 아래의 남부 지역은 전 황제 바오다이(Bảo

---

<sup>79</sup> 박태균. 2015.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창비. p19.

<sup>80</sup> Do Thanh Thao Mien. 2019.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8.

Đại)를 수상으로 하는 베트남국(State of Vietnam, SOVN)이 관리하게 되었다. 제네바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주권과 독립권을 인정한다. 둘째, 인도차이나 전부에서 사격을 정지한다. 셋째,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넷째, 베트남 남북에서 개인에게 자유로운 체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2년 후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로 나아간다.

##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1953년 연말까지 프랑스 정부는 비엣민(Việt Minh)<sup>81</sup>에게 군사적으로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였는데, 프랑스군이 철수해도 인도차이나 정치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공산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려면 프랑스가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프랑스는 비엣민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었다. 1954년 초 영국 외무장관 이든(Anthony Eden)은 회상록에서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이 늦을수록 프랑스가 불리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하였다. 당시 강대국에게 제네바회담은 유럽방위공동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개최된 정치회담이었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적절한 수단 정의(define appropriate means)”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sup>81</sup> 베트남 독립동맹회(Việt Nam Độc Lập Đồng Minh Hội)의 약자이고 1941년 호치민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민족주의 계열 정당의 동맹으로 결성되었다.

미국도 제네바회담을 통하여 인도차이나 전쟁을 해결할 의도를 표시해본 적이 없었다.<sup>82</sup>

제네바회담은 1954년 4월 26일에 개최되어 1954년 7월 21일에 종결되었다. 처음에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아무런 선언이나 제안도 채택하지 않은 채 종결되었고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날인 5월 8일부터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제네바회담이 4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과 프랑스가 외교적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엔비엔푸전투의 승리가 중요하였다. 그래서 중국 군사고문단이 베트남인민군 총사령 보응웬지암(Võ Nguyên Giáp)과 상의하여 3월 중순 전면공격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프랑스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력을 아끼지 않고 디엔비엔푸전투에 쏟았다. 5월 7일 디엔비엔푸전투 종결 후 양측의 협의대로 디엔비엔푸 지역의 반경 10km 이내에 공군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야 하였는데 프랑스는 제네바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5월 18일과 19일에 힘람(Him Lam)언덕과 41번 로드(Đường 41)<sup>83</sup>를 폭격하였다.

제네바 회담이 지연된 이유는 베트남과 프랑스가 분단선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에 프랑스는 18선을 제안하였고 베트남은 고도 후에(Cố đô Hué) 또는 다낭(Dà Nẵng), 떠이응웬(Tây Nguyên) 등 전략적인 지역의 관리권을 갖고 싶어서 13선을 제안하였다. 6월 23일 제네바에 도착한

---

<sup>82</sup> Kevin Ruanke. 1994, “Anthony Eden, British diplomacy and the origins of The Geneva Conference of 1954”, *The Historical Journal*, 37, 1 (1994), p157 – 170.

<sup>83</sup> 힘람언덕은 프랑스의 중요한 기지 중 하나이며 디엔비엔푸 캠페인에 공산군이 처음으로 공격을 시작했던 기지였다. 41번 로드는 디엔비엔푸 캠페인에 전선과 후방을 연결시키는 로드였다.

망데스(Pierre Mendès) 프랑스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몰로또쁘(Vyacheslaw Molotov), 저우언라이, 팜반동(Phạm Văn Đồng) 등과 일련의 회담을 열었다. 그 결과 군사적 휴전에 관한 교섭은 가속화되었지만, 특히 휴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프랑스는 북위 18 도선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고, 팜반동은 13 도 또는 14 도선을 고집하였으므로 합의가 순조롭지 않았다.<sup>84</sup>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전선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 1954년 7월 9일 베트남은 14 선으로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에 7월 13일 베트남은 16 선까지로 양보하였다. 그러나 7월 17일 프랑스는 9번 로드(Đường 9)<sup>85</sup> 만 베트남국(SOVN)의 영토에 속하면 분단선을 어디에 긋는지는 상관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7월 20일 오후에 중국의 조언에 따라 베트남은 분단선을 17 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음날에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었다. 17 도선을 경계로 한 것은 당시 프랑스에 유리한 결정이었다. 17 도선을 북베트남이 받아들인 것은 중국과 소련 두 나라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무엇보다 제네바협정은 만료기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정전협정 경우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네바협정 경우 만료기한이나 향후 정치회담을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었다. 1956년 7월 20일 분단 상태를

---

<sup>84</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 368.

<sup>85</sup> 1930년에 프랑스가 9번 로드 세웠으며 베트남에서 전략적인 위치이다. 베트남 중부에 있는 쭈엉선(Trường Sơn)산맥을 가로질러나 있으며 베트남전쟁 시 북베트남의 침입을 차단했다.

해소하고 베트남을 통일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규정하였는데 1956년의 총선거에 참여할 정부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의 제14조는 “임시 군사 경계선의 양쪽이 관리한 구역의 정치 및 행정 조치에 관하여, (a) 베트남이 통일하기 위해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각 지역의 민사행정은 본 협정에 따라 군을 재편성할 당사자(프랑스와 북베트남)의 권한에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북베트남정부가 관리하는 17 선 위의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7 선 아래의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었다. 남베트남이 자국의 영토와 민사행정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외국군에 넘겨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sup>86</sup> 따라서 제14조항은 프랑스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고 하노이정부와 바오다이(Bảo Đại)정부의 간에 합의해야 하였다는 것이 더 적당하다.

##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제네바 회담 참가국은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등 대강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민주공화국, 베트남국 등 9 개국이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각 협정은 따로 체결하며 베트남 경우에는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만 사인하고 미국과 베트남국은 사인을 거부하였다. 제네바 협정에 사인한 것은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연합 총사령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총사령이었다. 1949년 3월 프랑스는 바오다이(Bảo Đại)

---

<sup>86</sup> Arthur J. Dommen. 2001. “The Indochinese Experiences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s: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257.

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베트남은 독립을 인정받았지만 프랑스 연합 내에 속하면서 그에 따른 조건을 지켜야 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바오다이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바 회담에서 바오다이정부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디엔비엔푸전투에서 진 프랑스는 북베트남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오다이정부는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군사 집결 결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베트남을 분단시키는 것을 강렬히 반대하였다. 바오다이정부의 대표인 쩐반도(Trần Văn Đồ)는 프랑스와 비엣밍의 사령관의 합의로 사인된 정전협정이 베트남국에게 큰 위협을 준다고 표명하였다. 1955년 베트남에서 개최될 총선거의 참여자는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국이므로 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려면 바오다이정부와 협의해야 되었는데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은 베트남국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제네바 회담 종결 후에도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국은 서로 대화해본 적이 없었다. 이후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RVN)<sup>87</sup>은 협정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56년 총선거 실시를 거부를 하였다.

1953년 제네바협정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니, 소련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공산군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였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제네바의 합의에서 호치민 정부의 대표단은 인도차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해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베트남 분단 합의는 베트남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중국, 소련과 영국,

---

<sup>87</sup> 1955년 남베트남에서 국민의결을 통해서 바오다이를 탄핵했으며 응오딩찌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 베트남국에서 베트남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꿨다.

프랑스 간에 합의된 것이었다.<sup>88</sup> 동남아시아 지역 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관심을 가지던 영국은 당연히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인도차이나 공산화을 막는 것만 원할 뿐이었다. 영국 외무장관 이든(Anthony Eden)의 주된 관심사는 말레이시아였고, 베트남에서 공산 측이 승리하게 되면 지역 안보가 위협받겠다고 인식하였다. 영국이 제네바회담에서 인도차이나 문제 제기에 동의한 것은 프랑스가 유럽방위공동체(EDC, European Defence Community)<sup>89</sup>에 사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sup>90</sup>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동맹공산인 북베트남의 이익을 저버렸고 북베트남의 베트남 전체 통일과 인도차이나 해방 노력을 포기하게 했다. 중국은 제네바회담을 이용해 북베트남을 견제하였고, 소련은 프랑스에 유럽방위공동체 가입 거절을 설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베트남에게 제네바회담에서 양보하라고 호소하였다.<sup>91</sup>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sup>88</sup> Do Thanh Thao Mien. 2019.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9.

<sup>89</sup>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는 1952년 5월 파리에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국이 서유럽방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EDC 조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던 초국가적 성격의 군사공동체이다. 즉, 서유럽방위를 도모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고, 서독의 재군비를 허용하여 통합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던 EDC 조약은 동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식승인을 받았다. 궁극적으로는 브뤼셀 조약을 대체하려 한 EDC 계획은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가 서독의 재군비를 인정치 않고 조약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브뤼셀 조약의 강화·확대가 다시 논의되어 1955년 5월 파리협정에 의해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sup>90</sup> Kevin Ruanke. 1994, “Anthony Eden, British diplomacy and the origins of The Geneva Conference of 1954”, The Historical Journal, 37, 1 (1994), p159, 168.

<sup>91</sup> Pierre Asselin.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11:2, p156.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네바회담에서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중국 국경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만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얻었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베트남 공산당이 인도차이나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에게 이익이 되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산권이 형성된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공산당의 영향을 무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sup>92</sup> 소련과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디엔비엔푸 승리를 거두었어도 북베트남은 제네바회담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Pierre Asselin 의 주장에 따르면 북베트남이 제네바협정에 사인한 것은 단순히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내린 선택이었다. 1953년까지 북베트남이 많은 지역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도시는 여전히 프랑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비엣밍(Việt Minh)은 베트남의 산간지역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으나 프랑스가 가까운 장래에 몰락하리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어려웠다. 디엔비엔푸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프랑스군보다 비엣밍군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3 배 정도 많았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7년을 경과하여 고갈된 상태가 되고 동시에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지속하는 것보다 외교 분야에서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시 북베트남의 주장이었다. 주목할 점은 베트남인민군(PAVN, People's Army of Vietnam)과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가 디엔비엔푸 승리를 계기로 전쟁을 원하였고

---

<sup>92</sup> Chen Jian. 1993. "China and the First Indochian War 1950-54", The China Quarterly 1993, p107-109.

제네바협의를 억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제네바협상의 성과는 베트남 남부지역의 혁명투쟁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고 협정에 따라 남부지역에서 철군함으로써 하노이가 남부지역을 버렸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베트남 측은 제네바협정이 군사와 외교적 분야에서 큰 성공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디엔비엔푸승리는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고 확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며 제네바회담을 유야무야하려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미국 개입주의자들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제네바협정을 통해 주권, 독립, 통일, 그리고 베트남과 베트남의 인접국인 라오스, 캄보디아의 영토적 일체성 존중에 기반을 둔 평화가 인도차이나에 복원되었다. 거의 1세기에 걸친 국가 해방을 위한 투쟁, 그리고 8년간 지속된 베트남 인민의 저항으로 북부가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sup>93</sup> 제네바협정 체결 후 베트남공산당은 협정의 조항들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으면 전 베트남이 사회주의로 나아갈 조건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협정에 사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하노이 정권이 인정받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지받지 못하던 바오다이정부를 총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미국 측은 회담 중반까지 고집하던 군사적 동맹을 통한 전쟁의 국제화가 불가능해지자 회담 자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으며, 베트남 통일에 소극적인

---

<sup>93</sup> Võ Nguyên Giáp. 2019. 강범두, 『1945-1954 베트남 독립전쟁 회고록 디엔비엔푸』, 이미지프레임, 길찾기.

자세를 보여 마지막까지 최종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sup>94</sup> 유엔이 감독하는 자유선거를 통해 베트남에서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이런 내용은 제네바협정의 규정과 무관한 것이었다. 제네바회담에서 무력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명을 발표하였지만 1954년 8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의 극동정책 재검토(Review of U.S Policy in the Far East)”라는 내부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 문건은 불과 얼마 전 타결된 제네바합의 내용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다.<sup>95</sup>

미국의 극동정책 재검토에 따르면 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따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해 외부 공산세력이 원격조종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프랑스와 바오다이 정부만 지지하는 자세는 미국의 지역 내 지도력에 대해 많은 국가의 의구심을 낳게 될 것이다. 한편 제네바협정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공산세력들은 지역 내 평화를 역설하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대해나갈 것이 틀림없다. 아시아에서 중국공산당의 힘을 줄이면서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위기가 발생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국공산당이 지원해주는 세력들에 대해 무력으로 반응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호전적인 움직임에 맞서 위기가 고조될 경우 바로 무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미국의 인정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었다. 미국은 인도차이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2-1953년 재정연도에 미국은 프랑스와 프랑스연합정부에 3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

<sup>94</sup> Do Thanh Thao Mien. 2019.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9.

<sup>95</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373.

1953-1954년 재정연도에 지원금액은 10억이 넘었으며 인도차이나 전쟁 비용의 5분의 4를 차지하였다.<sup>96</sup> 미국과 베트남(SOVN)이 조인하지 않았으므로 제네바협정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프랑스와 북베트남 간의 양자 협정에 지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부터 9년간 지난한 전쟁을 경과하며 철수만을 원하게 된 프랑스와 휴전을 바탕으로 향후의 혁명 목표를 촉진하고 싶었던 북베트남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이었다.<sup>97</sup>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정 체결 2년 후 1956년 7월 20일에 남북 총선거로 결정하겠다고 협정에 명시하게 되었다. 1953년 10월 27일 프랑스 국회회의에서 프랑스 수상 조지프 라니엘(Joseph Laniel)은 현재 베트남 정계에서 호치민보다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1956년에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호치민이 승리하겠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알고 있었다. 1955년 6월에 들어서자 하노이는 1956년으로 예정된 국제 감시하의 선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 공식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다.<sup>98</sup> 1956년 5월과 6월 총선거와 통일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하노이정부가 이렇듯 1955년과 1956년 제네바협정의 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총선거라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서 권력을 확보하고

<sup>96</sup>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Việt Nam. 2017. “Liên Xô và Việt Nam trong những năm chiến tranh Đông Dương lần thứ nhất. Hội nghị Geneva năm 1954. Tuyển chọn văn kiện và tài liệu.” NXB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베트남 국립자료센터. 2017.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소련과 베트남. 1954년 제네바 회담. 문서와 자료 편집』, 정보와 매디어 출판사.

<sup>97</sup> Pierre Asselin. 2007. “Choosing Peace: Hanoi and the Geneva Agreement on Vietnam, 1954–1955”,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007, Vol.9(2), p100.

<sup>98</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110.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sup>99</sup> 그러나 제네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공정부는 1956년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베트남공화국의 대통령인 응오딩찌엠(Ngô ĐÌnh Diệm)은 이미 1955년 1월 남베트남이 총선거를 치를 법적·도덕적 의무가 없기에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955년 5월에 미국은 총선거에 대한 사이공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며 제네바협정이 정한 총선거 실시일 바로 전인 1956년 6월에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의 총선거 거부 입장을 유보 없이 지지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sup>100</sup>

하노이는 제네바협정 당사자들 특히 회의 의장국인 영국과 소련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56년 5월 7일에 런던에서 회의 의장국인 영국과 소련은 하노이와 사이공정부에 총선거 실시를 호소한 각서를 보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소련은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베트남문제로 미국과 갈등할 의사가 없었다. 중국은 제네바회담을 다시 열자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다. 중국은 베트남 분단으로 남쪽 국경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여서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를 위태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영국은 더 이상 베트남문제에 간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만약 개입하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협정 당사국인 프랑스는 남베트남을 강제할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 일에서 제3자가 되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태도에

<sup>99</sup> 노영순. 2007. 「분단 전기(1954~1963년) 베트남 통일문제」, 아세아연구 50(3), p10.

<sup>100</sup> 노영순. 2007. 「분단 전기(1954~1963년) 베트남 통일문제」, 아세아연구 50(3), p11-12.

하노이정부는 분개하였지만 대안이 없었다. 이후에도 하노이정부는 매년 총선거를 주장했지만 사이공정부는 그때마다 거부하였다.<sup>101</sup> 1958년 3월 7일 북베트남의 팜반동(Phạm Văn Đồng) 수상은 응오딩찌엠(Ngô Đình Diệm)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팜반동은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상호 군비 감축과 무역 거래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4월 26일 회신에서 응오딩찌엠은 남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북쪽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sup>102</sup>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을 통일시키겠다는 제안은 제네바협정에 명기되었는데 만약 2년 후에 하노이정부나 사이공정부가 선거를 거부한다면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약이 전혀 없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유리한 조건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총선거를 거절할 가능성이 없지 않는다는 것을 한반도의 사례를 통하여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회담에서 무시하였다.

협정의 27조에서 쌍방사령관과 향후 쌍방의 후임자가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며 실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쌍방의 후임자”라는 뜻은 뚜렷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의 27조항과 한국정전협정의 17조항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전협정의 17조항은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

<sup>101</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377.

<sup>102</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114.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었다. 한국정전협정은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과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그 다음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정전협정 경우에는 클라크 대장의 후임자와 김일성 원수의 후임자가 후임 사령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네바협정 경우에는 군대 총사령관 자격으로 프랑스의 엘리 장군과 비엣밍의 보응웬지압 장군의 후임자가 후임 사령관이 되고 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었고, 1950년에 베트남국(SOVN), 뒤에 1955년에 베트남공화국(RVN)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베트남국의 대표인 바오다이나 베트남공화국의 응오딩찌엠이 프랑스에 철군을 요청해서 프랑스가 요청에 동의하게 될 경우 프랑스 사령관의 후임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sup>103</sup> 프랑스 사령관의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1956년 4월에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

<sup>103</sup> Robert F. Randle. 1969. “Geneva 1954. The Settlement of the Indochines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timore, p405-406.

###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제네바협정의 10 조는 “양측의 사령관, 한 쪽은 인도차이나 프랑스 연합군 사령관, 다른 한 쪽은 베트남인민군 사령관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정전협정처럼 제네바협정의 16 조에 따라 베트남 경외로부터 증원된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17 조에 따라 베트남 경외로부터 증원된 작전비행기, 전함, 장갑차,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또는 소모된 무기 및 탄약 등 전쟁물품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일 교환을 전제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 20 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남베트남에서 반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산주의자 검거 열풍이 하노이 지도자들에게 압박 요인이 되면서 1959년부터 하노이는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노이는 분단 당시 북쪽으로 넘어왔던 남부 출신들을 세포요원으로 남파하였다. 1960년 들어서 미국이 군사고문단을 342명에서 685명으로 배로 늘리자,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이와 때를 맞춰 게릴라 활동도 “베트남민족해방전선”으로 개편 결성하게 되었다. 1960년에 북쪽에서 5,000여 명의 정치기간요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sup>104</sup>

---

<sup>104</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315.

북베트남은 1959년에 남부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 보급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달할 제559 수송단을 창설해 그해 5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호치민로드 주도로로부터 남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의 각 지역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만들어졌다.<sup>105</sup> 하노이 정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따라 구축되어 있는 “호치민로드”와 해상보급로를 이용해 다량의 최신장비를 남베트남 지역에 공급하였다. 또한 1964년 한 해 동안 12,000여명의 북부출신 정예요원과 함께 정규군을 남파하였다.<sup>106</sup> 1959년부터 1964년까지 라오스를 통해 북위 17도선을 연결하는 9번 로드, 즉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베트남 북부에 접근하는 통로를 구축하였다.<sup>107</sup>

제네바협정에 대해 미국은 베트남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입장은 6월의 “펜타곤 폐이퍼”에 잘 나타나 있었다. 미국은 24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공화국 육군 ARVN을 훈련시키는 한편,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랑스와도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랜스데일(Edward G. Lansdale) 대령이 미국 군사고문지원단 MAAG 단장으로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하는

---

<sup>105</sup> 오홍국. 2015. 「간접접근전략으로 본 베트남통일전략 연구」, 베트남연구, 제13호, p8.

<sup>106</sup> 오홍국. 2015. 「간접접근전략으로 본 베트남통일전략 연구」, 베트남연구, 제13호, p9.

<sup>107</sup> 오홍국. 2015. 「간접접근전략으로 본 베트남통일전략 연구」, 베트남연구, 제13호, p10.

행동으로 비쳤으나 랜스데일(Edward G. Lansdale)은 이러한 지적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sup>108</sup>

제 19 조항은 베트남에서 외국의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하며, 양측 군사동맹 가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을 체결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1954년 9월에 미국은 “동남아시아 집단 방위 조약 (Southeast Asia Collective Defense Treaty)”을 세우고 프랑스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가 철수한 후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 (SEATO,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는 냉전하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대에 막기 위해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집단 방위 조약” 또는 “마닐라 합의” (Manila Pact)에 서명함으로써 창설되었다.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라는 명칭과 달리 가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과 필리핀밖에 없었고 나머지 구성원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 등 여섯 국가이었다. 당시 북베트남은 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프랑스가 제네바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강렬히 비난하였다. 동남아시아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에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북베트남은 16조, 17조, 18조, 19조에 따라 제네바협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협정 제 14 항에 근거해 양측은 전쟁에서 활동하였던 개인과 단체에게 보복이나 차별 행위를 자제하고 그들의 자유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협정 체결 후 사이공정부가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베트남측의 자료에 따르면 1954년 8월 2일부터 깁도이(Kim Đôi), 깜로(Cam Lộ),

---

<sup>108</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101.

옹언선(Ngân Sơn), 모까이(Mô Cày)에서 수많은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많았다. 제네바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 월까지 프랑스군로 인해 보복, 체포, 학살 등 사건은 709 개 발생하고, 사망자가 619 명, 부상자가 2,786 명, 피검자가 6,112 명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북베트남은 중앙연합위원회의 프랑스연방총지휘 또는 국제위원회에 몇 차례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국제위원회가 조사해본 결과, 보복 및 체포 등의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sup>109</sup> 사이공정부가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을 총 13,000 명 체포하면서 사격 중지 날부터 1955년 1월 31일까지 테러와 학살 사건이 총 2,321 개 벌어졌고 사망자가 882 명, 부상자가 3,742 명에 이르렀다.<sup>110</sup> 1957년 4월 국제위원회는 사이공정부의 협조심 부족으로 인하여 협정의 제 14 조(나)항 감시가 무력해졌다고 제네바 회의 의장국에 보고하였다.<sup>111</sup>

#### 제 4 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협정의 5 조와 15 조에 근거해 제네바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25 일 내에 양측의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해야 하며 300 일 내에

---

<sup>109</sup>프랑스연방군 집결 지역에서의 협정 위반 행동, 특히 콜린스의 사절단과 관련하여 국제감독위원회에 송부한 베트남인민군 총사령관의 문서, 노동신문, 282 호, 1954년 12월 11일 (“Thư của Bộ tổng tư lệnh quân đội nhân dân Việt Nam gửi ủy ban quốc tế giám sát và kiểm soát ở Việt Nam về các hành động vi phạm hiệp định xảy ra trong vùng tập hợp của các lực lượng liên hiệp Pháp, đặc biệt là Phái đoàn tướng Cô lin” Báo Lao động, số 282, ngày 11/12/1954)

<sup>110</sup> 베트남 제 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sup>111</sup> Robert F. Randle. 1969. “Geneva 1954. The Settlement of the Indochines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timore, p475.

프랑스는 17 선 위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 반면에 비엣밍은 집결해서 북쪽을 향해 나아가야 하였다. 하지만 협정에 따라 정규군만 철수하면 되었으며 유격대나 정치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노이정부를 지지한 남베트남 정치세력은 정규군이 아니어서 필수적으로 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에 머무르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이 외에 하노이정권의 지시에 따라 남베트남에 비밀리에 머무르면서 지하공작 활동을 한 간부, 간사들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베트남 측에서 1954년 협정 체결 후 남베트남에 머물렀던 공산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제네바협정 후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남베트남에 머물렀던 간사 및 군인에게 지원한 정책 내용이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 분명히 1954년 후 북베트남의 지하공작 활동은 부인할 수 없다. 1956년부터 응오딘찌엠정부는 제네바협정 체결 후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검거를 실시하였다. 북베트남은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지하공작 활동을 위해 10,000 ~ 15,000 명을 남부에 남아 있게 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때 체포되었다.<sup>112</sup>

협정 조인 후 300일 동안 양측의 인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체제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고 남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제네바협정 후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10월에 비엣민이 하노이를 접수하기 전에 심리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랜스데일(Lansdale)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우선 급한 임무는 북쪽 난민을 남쪽으로 많이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CIA는 하노이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는 대규모 카톨릭

---

<sup>112</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378.

신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지역에서는 카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30%가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세력 기반 확대에 열심이었던 카톨릭 응오 딩찌엠은 이들에게 “남부에 있는 프랑스의 토지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사이공정부는 “신은 남으로 갔다”는 슬로건을 활용해 북베트남 신자들을 이끌었다. 신앙만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CIA는 북베트남 인민들을 설득해 남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북베트남 인민들에게 “그대로 북쪽에 남아 있으면 반역자로 몰려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CIA는 이러한 첫 번째 작전이 거짓으로 드러나 실패하자 다음에는 베트남 인민들이 잘 믿는 점성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다.<sup>113</sup> 사이공정부와 CIA가 세운 주민이주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북베트남 인민은 90 여만 명 가운데 50 만 명 이상 카톨릭 신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sup>114</sup> 반면에 4,300 명 정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베트남측은 사이공정부가 종교와 신앙을 활용해 북베트남 인민을 유치했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협정 제 21 조는 제네바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를 30 일 이내에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포로 수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다. 베트남 자료는 프랑스가 사전에 협의된 것보다 적은 수의 전쟁포로를 송환하였고, 포로 송환 실시가 프랑스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sup>113</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104-105.

<sup>114</sup> 2018. 「‘베트남공화국’의 몰락: 지엠 정권의 ‘식민지적 민족주의’, ‘서구적 종교편향’, ‘하향적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담론 201, Vol.21(1), p63.

프랑스가 체포한 정치 포로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송환 포로 명단의 포로 수가 실제보다 많이 줄었으며 특히 송환된 사람이 주로 1953년 말과 1954년에 억류된 사람이었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체포한 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전쟁포로의 일부를 응오딩찌엠 정부에 넘겨주기도 하였다. 푸꾸억(Phú Quốc)섬에서 응오딩찌엠 정부가 체포한 북베트남 포로 수만 10,000명에 이르렀고, 꼰다오(Côn Đảo)섬에서 체포된 포로 수만 3,000명이라고 보도되었다.<sup>115</sup>

##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제 34 조 및 35 조에 따라 제네바협정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ntrol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국제위원회의 주 임무는 양측의 군대 이동 및 철수를 감시하는 것, 비무장지대와 군사 재집결 지역을 시찰하는 것, 전쟁 포로 및 민사 포로 석방 활동을 감독하며 베트남 영토로의 군사인력, 고문단 또는 무기, 탄약 반입을 감시하는 것이다. 국제위원회의 위원은 캐나다, 폴란드, 인도 등 세 국가를 포함하였다. 처음에는 국제위원회가 폴란드, 인도, 체코슬로바키아, 파키스탄 등 네 국가로 구성될 예정이었는데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정부로 인정하였고, 위의 네 국가가 프랑스와는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베트남국과 외교를 맺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하며 남베트남이

---

<sup>115</sup> “Quân đội Pháp cần phải thành thật trong việc trao trả tù binh”, Báo Nhân dân, số 220, 3/9/1954 (“프랑스군은 전쟁포로송환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인민신문, 220 호, 1954년 9월 3일).

국제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비판하였다.<sup>116</sup> 캐나다, 폴란드, 인도 세 국가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정부는 국제위원회가 실제로는 사이공정부가 공산주의자를 검거한 조치에 대한 북베트남의 제소를 접수해 조사한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반대하였다. 1954년 8월 11일 북쪽의 하노이에 국제위원회 사무소가 세워졌고, 1955년 8월 사이공에 국제위원회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활하지 않은 협의로 인해 1956년 11월에야 사이공에 국제위원회 사무소가 설립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제네바정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남베트남정부 때문에 국제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1955년 10월 26일 이후 베트남공화국이 탄생하여 자주성이 강해지면서 국제위원회 또는 프랑스 사령부의 효율적인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베트남공화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국제위원회는 17선의 아래 지역에 감사팀을 보낼 수 없었으며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국제위원회의 1955년 4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보고서에 반영되었다.<sup>117</sup>

양측이 전쟁 무기와 군사 이동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위원회는 1954년 8월에 설립되자마자 협정의 16조, 17조, 18조, 19조 실시를 감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기와 군사 이동이 내부적 범위 내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면서 프랑스 측은 양측의 내부적 범위 내의 활동을

---

<sup>116</sup>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Việt Nam. 2017. “Liên Xô và Việt Nam trong những năm chiến tranh Đông Dương lần thứ nhất. Hội nghị Geneva năm 1954. Tuyển chọn văn kiện và tài liệu.” NXB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베트남 국립자료센터. 2017.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소련과 베트남. 1954년 제네바 회담. 문서와 자료 편집』, 정보와 매디어 출판사.

<sup>117</sup> Robert F. Randle. 1969. “Geneva 1954. The Settlement of the Indochines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69.

감시하는 것은 국제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17 조와 20 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에서만 전쟁 무기 및 탄약을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비협조로 영공과 영해에서 국제위원회의 정찰 업무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56년 초 하노이정부가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감시팀을 자발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북쪽 국경에서 국제위원회의 감시가 불가능해졌다. 같은 시기에 남베트남에 군사 설비 정비 및 대체를 목적으로 온 미국 군사 인원 350명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고 위원회가 사이공정부에 요청하였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외국군의 존재로 인해사이공정부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노이정부가 강렬히 비판하는 상황에 국제위원회가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이공 측은 답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임무와 책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정부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 깊게 간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제위원회도 스스로 인정하였다.<sup>118</sup>

실제로 국제위원회의 권한은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권고의 효과를 갖지 못한 경우에도 국제위원회는 회의 의장국과 협정에 체결한 국가들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이 위반한 경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제재 방법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국제위원회는 무력으로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사이에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없었다. 1957년 1월 국제위원회는 남쪽이고 북쪽이고 휴전협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위원회의 지적은 양측 모두에게 구실을 준 셈이었다. 당시 캐나다 위원

---

<sup>118</sup> Robert F. Randle. 1969. "Geneva 1954. The Settlement of the Indochines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timore, p467-470.

크리스토퍼 대그(C.Dagg)는 양측의 화해 정신 부재가 처음부터 위원회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불평하였다.<sup>119</sup>

국제위원회 외에 연합위원회(Joint Commission)도 설립되었으며 비엣민과 프랑스의 양측 대표로 구성되었다. 제네바협정의 연합위원회는 한국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이다. 연합위원회 임무는 협정을 지키고 비무장지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합위원회는 1956년 4월 28일까지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무산되어버렸다. 1957년 9월 20일 국제위원회는 연합위원회 재가동을 논의하자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정부에 요청하였다. 1958년 4월 들어 국제위원회가 다시 요청하였는데 남베트남 정부가 거절하였다.<sup>120</sup>

국제위원회는 연합위원회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연합위원회에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국제위원회는 양측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한국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경우에도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공산 측과 비공산 측이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합의를 모색하기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소결

제네바회담이 1954년 4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므로 3월부터 비엣민과 프랑스는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디엔비엔푸전투에 전력을

---

<sup>119</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113.

<sup>120</sup> 제2 베트남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아낌없이 쏟았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전협상을 지지하였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협정에 사인하였고, 북베트남은 정부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로 나아갈 조건을 마련할 수 있어서 협정에 사인을 동의하였다. 1954년 제네바 협정 체결 후 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 노력을 보였는데 미국과 베트남 공화국은 협정에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시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955년 4월 하노이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영토에서 유격대 조직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발행하였는데 미국의 북베트남 침공에 대한 하노이 정부의 우려를 보여주었다. 남베트남에서는 베트남노동당<sup>121</sup>(VWP, Vietnamese Workers's Party)이 정치적 투쟁만 주장하고 있었다. 당시 쯔엉찡(Trường Chinh)은 남베트남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만 계속해야 하며 무장 투쟁은 하면 안 된다고 남베트남 공산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1959년 1월까지 정치와 외교적 해결책으로 남베트남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베트남노동당은 무장 투쟁으로 전략을 바꾸었다.<sup>122</sup> 더불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베트남이 총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총선거를 언급하던 때까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믿고 있었음이 확실하며, 총선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때부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뜻한다.<sup>123</sup> 결국 베트남은 통일을 이를 수 없었고 협정 후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

<sup>121</sup> 1951년부터 1976년까지 베트남공산당의 명칭이었다. 1976년 제4차 당대회를 열어 베트남노동당은 베트남공산당으로 개칭했다.

<sup>122</sup> Pierre Asselin. 2007. "Choosing Peace: Hanoi and the Geneva Agreement on Vietnam, 1954–1955",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007, Vol.9(2), p123-124.

<sup>123</sup> 노영순. 2007. 「분단 전기(1954~1963년) 베트남 통일문제」, *아세아연구* 50(3), p13.

1954년 제네바 협정부터 하노이는 서방국의 외교를 불신하였기 때문에 제2차 베트남 전쟁 발발 후 1968년이 되어서야 미국과 협상하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3월에 미국은 협상을 재개하자고 하였지만 하노이는 사이공정부가 대체되고 미군이 철수해야 평화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베트남은 제네바 협약이 베트남의 모든 외국군대로부터의 해방을 규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침략국이며, 미국이 철군하고 사이공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미국과 사이공정부가 1954년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사례를 보고 하노이는 1973년 파리협정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3년 파리협정 체결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남베트남에서 혁명성과를 보장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파리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는 무장 투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1975년 사이공정부를 몰락시켰고, 무장으로 통일된 베트남은 현재까지 적개심이 풀리지 못한 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1953년 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대해 남.북한과 남.북베트남의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북한은 휴전협정 체결일을 1973년부터 “조국해방전쟁 승전기념일”로, 1996년부터 국가명절인 “전승절”로 기념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 날을 기념하는 대신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을 한국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sup>124</sup> 마찬가지로 당시에 하노이정부는 제네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인식한 반면에 사이공정부는 민족의 큰 비극이라고 여겼다. 제네바협정을

---

<sup>124</sup> 이영진 . 노동영. 2015. 「한국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학연구, 30 June 2015, Vol.26(1), p9.

체결함으로써 프랑스군을 철수시켰으며 미국의 침략 의도를 막으면서 북베트남 지역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베트남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지금까지 명기하고 있다. 북한과 북베트남이 정전협정 사인에 동의한 이유는 국가를 분단시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으며, 한국과 남베트남이 협정 사인을 거절한 것 역시 평화를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전협정에 대해 남북한과 남북베트남의 인식과 평가가 차이 나는 것을 보면 당시의 협정 자체가 많은 문제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제 5 장 1973년 파리협정

1954년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자 2년 후 총선거 실시를 통하여 베트남을 통일시켜야 했는데 남베트남정부가 총선거를 거부함으로써 분단 상태가 계속되었다. 1963년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전쟁이 발발했다.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막아야 했기에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베트남에 개입하였다. 베트남의 파리협상은 1968년 1월 30일 새벽부터 시작된 구정공세(Tống tấn công Tết Mậu Thân 1968, Tet Offensive)<sup>125</sup>를 배경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사이공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20여 명 규모의 베트콩 특공대가 침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결국 7시간 동안의 총격전 끝에 이들은 모두 진압되었지만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의 치밀한 공세가 TV를 통해 미국의 안방에 보도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2년간 맥나마라(McNamara) 장관이 주도해온 공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혀 베트남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3월 31일 존슨은 DMZ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애버렐 해리만(W. Averell Harriman)을 대표로

---

<sup>125</sup> 구정공세 (Tống tấn công Tết Mậu Thân 1968, Tet Offensive)는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졌던 대규모 군사 공세 중 하나로 북베트남 인민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 공화국, 미국과 동맹국 군대에 맞서 1968년 1월 30일 개시한 작전이다. 구정공세 일련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에게 점령당했고, 남베트남 대통령군이 북베트남 정규군인 베트남 인민군에 의해 습격을 받으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 측의 승리를 확신했던 전 세계 국민 여론이 뒤바뀌었다.

지명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북베트남과 평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비쳤다.<sup>126</sup> 1968년 5월 13일 파리협상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73년 1월 27일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은 9장 23개조로 구성된 본협정과 4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군사, 포로, 남베트남의 국내정치문제, 남북베트남간의 문제, 정전감시, 라오스와 캄보디아 문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등 7가지 주요한 문제를 장별로 구분 규정하고 있었다.

## 제 1 절 협정의 체결 기간

파리협정은 1968년 5월 13일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5년 동안 6단계의 협상<sup>127</sup> 중 201번의 회기를 거쳐 1973년 1월 27일 체결되었다. 군사전투에서

---

<sup>126</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6-7.

<sup>127</sup> 첫번째 단계는 1968년 5월 13일부터 1969년 1월 25일까지이며 미국과 하노이정부는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중단하는 것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한 정부로 협상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타협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69년 1월 25일부터 1969년 5월 14일까지이며 미국과 하노이정부는 각자 제안을 수립하면서 철수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69년 5월 15일부터 1970년 10월 7일까지이며, 미군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하는 북베트남의 미국 철수 요구와 정전하면서 양측이 인도차이나에서 동시 철군하자고 하는 미국의 제의가 충돌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1970년 10월 7일부터 1971년 7월 1일까지이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철수함, 총선거 1개월 전에 남베트남의 현직 대통령에게 사임을 강요함, 그리고 전쟁 후 인도차이나 재건설을 위해 지원함이라는 3가지 조건을 양보하였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1971년 말에 미군이 무조건 철수함, 남베트남에서 정전함, 전쟁으로 인한 인도차이나의 피해를 보상함(재건설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에서 티에우 대통령 없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서 그 정부가 임시혁명정부와 협상함이라는 4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1971년 7월 1일부터 1972년 7월까지이며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황이 나빠졌다. 마지막 단계는 1972년 7월 13일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이며 협정 초안을 수정하면서 우위를

승리함으로써 외교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한국정전협정의 폭격전략은 베트남 평화회담 과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sup>128</sup> 그러한 폭격의 일시중단은 북베트남이나 국내의 비평가들에게 미국이 북베트남을 폐괴하는 데에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sup>129</sup> 구정공세 후에 1968년 5월 13일 파리협상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주로 논의된 문제는 북베트남 폭격을 중지하는 것과 협상의 당사자 문제이었다.

처음부터 회담의 좌석 문제로 평화협상이 지연되었다. 하노이정부는 회담 테이블의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사이공정부는 하노이와 민족해방전선이 같은 편으로 직사각형으로 앉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노이는 협상의 4자가 동등하다는 뜻을 표하고 싶어 하였는데 사이공은 전쟁이 양측<sup>130</sup>의 문제임을 보여주고자 하여 직사각형 테이블을 고집하였다. 마침내 소련의 해결법에 따라 1969년 1월 25일 원형 테이블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회담의 좌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거의 3개월이 걸렸다.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되었다. 1968년은 평화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오히려 전황이 치열해지는 한 해였다. 1968년 5월만 해도 미군의 사망자가 2,416명에 이르렀다. 북베트남에 대한 미 공군의 정찰

---

점하도록 양측이 노력하였다. Nguyen Cao Dam. 1977. "The use of verbal influenc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Vietnam peace talks in Paris (1968-73). A study in purposive communi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참조.

<sup>128</sup>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p194.

<sup>129</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11.

<sup>130</sup> 한 측은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민족해방전선이고 다른 한 측은 미국과 베트남공화국이다.

비행이 1968년 11월에는 600회였으나, 1969년 4월에는 800회로, 5월에는 1,300회로, 8월에는 1,450회로 증가하였다. 1969년 미군의 전사자는 9,414명이었으며 전년도에는 1만 4,592명이었다. 닉슨이 주장하였던 “베트남화 계획” 기간에 남베트남의 병력 손실은 50%가 증가하여 25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도 50%가 늘어난 143만 5,000명에 달하였다.<sup>131</sup> 협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고지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노이의 전략은 “싸우며 협상한다” (vừa đánh vừa đàm), 즉 군사적·외교적 전략을 병행하여 적 진영 내부에서의 모순을 자극하는 것이었다.<sup>132</sup> 하노이 정부는 남베트남에 머무르는 북베트남 군대의 철수를 언급하지 않고 미군만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철수를 거절하면서 외국군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에서 동시에 철수하자고 제의하였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1970년 들어서 명예로운 철수를 위한 협상을 위해 오히려 캄보디아를 침공하였고 라오스에도 폭격을 시도함으로써 확전을 해나가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대규모 공습은 캄보디아 국내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크메르 루즈의 집원에 따른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sup>133</sup> 캄보디아에 있는 북베트남 기지를 전멸시키며 남베트남으로 들어온 병력 및 물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하면서 4월 29일 1만 5,000명의 미군과 5,000명의 남베트남군 병력이 두

<sup>131</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436-451.

<sup>132</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407.

<sup>133</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갈래로 나뉘어 침공작전을 개시하였다. 닉슨은 이 작전의 목적이 캄보디아 침공이 아니고 베트남전의 연결 선상에서 베트남에 남아 있는 미군을 보호하는 한편, 단계적인 미군 철수와 미국이 추구해 온 “베트남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를 뿐이라고 캄보디아 침공 논리를 성명하였다. 캄보디아 문제가 터지자 하노이는 비밀협상을 철회한 다음 9월에 들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에 1971년 1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의를 거쳐 닉슨 대통령은 라오스 침공을 승인하였다. 사이공정부는 호치민로드를 봉쇄하여 보급품 반입을 막기 위하여 라오스 침공 작전에 동의하였다.<sup>134</sup> 이러한 닉슨의 확전 노력은 평화협상으로 북베트남 정부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였지만, 과연 그러한 희생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국 방문 후 닉슨은 1972년 3월 24일 하노이정부와 협상을 중지하였다. 협상이 중지된 동안 미국과 하노이정부는 전투에서 군사 승리를 다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닉슨이 파리회담을 중지한다고 선언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 북베트남은 부활절 공세(Chiến dịch Xuân – Hè 1972)를 취하며 17선을 넘어 베트남공화국 육군과 미군을 대규모로 공격하였다. 미국은 북베트남 전 지역, 특히 중요한 항구들과 중국에서 북베트남으로 연결된 철도를 폭격함으로써 응수하였다.<sup>135</sup>

---

<sup>134</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524-530.

<sup>135</sup> Nguyen Cao Dam. 1977. “The use of verbal influenc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Vietnam peace talks in Paris (1968-73). A study in purposive communi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p126.

1972년 12월 북부폭격 Linebacker II 공세 후 1973년 1월 27일에 파리협상이 체결되었다. 사실 1972년 10월 들어 키신저(Kissinger)와 레드토(Le Đức Tho)가 합의한 협의안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11월에 사이공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변화 내용을 제시하였다. 12월에 하노이가 평화협의안을 피하는 기색을 느끼자 12월 18일 북부 대폭격을 다시 시작하였다. 미국은 폭격을 전쟁을 지속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하노이 정부를 협상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상 중 미국이 1972년 12월 말 강력한 북폭을 재개하여 하노이가 다시 회담에 응하자 12월 30일에 북폭을 중지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폭격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폭격받지 않은 시설들을 통해 북베트남이 무엇을 더 잃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한 폭격을 중단함으로써 그들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그러한 폭격의 일시중단은 미국이 북베트남을 파괴하는 데에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북베트남이나 미국 내의 비평가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sup>136</sup> 미국은 시종일관 힘의 우위를 통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유일한 처벌수단은 공습에 의한 대규모 폭격이었다. 철군을 유일하게 원한 미국행정부는 폭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처벌을 제거함으로써 회담을 속개시키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

<sup>136</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11.

북쪽 카드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였다. 결국 양측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지리한 줄다리기 속에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 제 2 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1973년 파리평화협정은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 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등 4자 협상단체 간에 서명을 하는 상태로 이루어졌다. 한국정전협정과 달리 파리평화협정은 정부 간에 서명되었다. 여기서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이 파리협정에 사인한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1956년에 사이공정부는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사이공정부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의 저항이 시작하였다. 1959년 5월 6일 사이공정부는 반공법인 “법 10/59”를 선포하여 수만 명을 토벌하였고 1960년 1월 21일 북베트남이 제네바협정 국제감시위원회에 “남베트남 수용소에서 지난 3년간 약 2천 명이 학살되었다”라고 폭로하였듯이 많은 사람이 처형당하였다. 중산층 육성이라는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남베트남의 토지개혁은 베트남 치하에서 이미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를 다시 거둬들여 카톨릭계에 재분배하는 등 오히려 반개혁성을 띠게 되어 농촌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게릴라 활동을 촉발하였다. 이 밖에도 1957년 5월 13일자 “라이프 Life”지는 응오딘찌엠(Ngô Đình Diệm)의 반민중성과 반민주성을 잘 보여주었고, 또 1955년 6월 25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서방인으로는 유일하게 베트남 지배하의 메콩델타를 방문한 조셉 알솝(Joseph Alsop)의 기행문이 베트남의 민중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 베트남 전역에서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과 적대 행위가 발생하여 내전상태로 돌입하여 2 차 남베트남민족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sup>137</sup> 1959년 북베트남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통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또 베트남정부의 탄압에 의해 대중혁명의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남베트남의 전사들에게 무장자위권을 허용하고, 비밀보급로를 개설하여 남베트남에 침입해 유격대 지원을 시작하였다.<sup>138</sup> 베트남전쟁의 본질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남베트남의 사이공정부와 북쪽에서 지원받고 사이공정부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사람 간의 전쟁이었다.<sup>139</sup> 이러한 남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1960년 12월 체계적인 반정부 조직인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구축되었고 1969년 6월 6일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이 설립되었다. 한국전쟁에서 1950년 6.25 제한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어난 제주 4.3 항쟁 진압, 여수군민항쟁 진압 등 인민봉기와 진압, 49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유격전쟁과 반유격전쟁, 남북 간의 38 경계선 충돌 등과 비슷하다. 이 기간 남한은 1948년 12월 국가안보법을 선포하여 1949년 한 해에 약 12만 명의 좌익 및 동조자를 구속하는 등 모든 좌익단체를 해체하고 보도연맹 등을 조직하여 좌익세력 척결작업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좌익도 남한 정부군도 서로 적극적인 공세로 나아가 무력충돌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려 10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sup>140</sup>

파리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베트남정부는 민족해방전선을 한 정부로 인정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다.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정부와

---

<sup>137</sup>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p59.

<sup>138</sup>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p60.

<sup>139</sup> 박태균, “박태균의 이슈한국사”, 창비, 2015.

<sup>140</sup>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p60.

민족해방전선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 정치체제로 인정받게 되면, 베트남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든 회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사이공정부는 민족해방전선을 협상의 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철수와 포로송환 문제만 중시한 미국은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하노이정부에 양보했으며 결국 파리협정은 4자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에 서명했던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민족해방전선)의 합법성이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개념에 타당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은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정부에 항의한 사람들이 설립하며 1969년 6월 6일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으로 이어졌다. 임시정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제 1 차 세계대전 시기부터이다.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망명정부가 국제법상 합법적인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타국민이나 타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가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主权的権利)를 주장해야 한다. 둘째, 망명정부가 수립된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 본국에 있거나 타국에서 새로 수립될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수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타국에서 위의 요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기존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본국을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망명정부가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국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망명정부가 외국에서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현실적인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up>141</sup>

베트남공화국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설립되자마자 중앙에서 지방까지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정권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무장 세력도 상당히 구성되어 1966년 11월 14일까지 31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베트남공화국 군대의 절반이었다. 민족해방전선은 중앙에서 50 위원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아래에도 군사, 경제재정, 교육, 의료, 외교 등 다섯 분야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각 위원회는 정부 부처처럼 해당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도 현과 읍의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외교적 분야에서 1969년 6월까지 임시혁명정부를 인정한 국가는 총 23개국이었고, 그중에 21개국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2월 25일 쿠바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설립하였다.<sup>142</sup> 그러나 베트남민주공화국 또는 베트남공화국과 달리 해반민족전선은 기존 정부의 계승 정통성이 부족하였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의 경우에는 8월에 비엣민이 베트남의 마지막 왕에게서 퇴위선언문을 받았고, 1945년 9월 2일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 선언을 선포하였다. 베트남공화국의 경우에는 1949년 3월 프랑스가 바오다이와 협정을 맺어 베트남이 코친차이나까지 통합한 하나의 국가임을 인정하였으며 6월 바오다이가 베트남국의 국가 원수로 취임하였다. 1955년 10월 26일 응오딩찌엠은

<sup>141</sup> 李庸中.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Vol.4(1), p107-108.

<sup>142</sup> Hà Minh Hồng. 2010. “Mặt trận dân tộc giải phóng miền Nam Việt Nam, 1960-1977”, NXB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하민홍. 2010.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1960-1977』, 호치민시출판사, p138.

남베트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베트남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바오다이를 폐위시켰다. 그러나 민족해방전선은 정통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베트남공화국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해방전선은 당시 베트남공화국의 입장에서 반란군에 불과하였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북베트남에 예속되지 않았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정부는 민족해방전선을 북베트남의 도구로 보고 있었다. 사이공정부는 민족해방전선이 베트남노동당에 종속되어 있는 남부중앙국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sup>143</sup> 남부중앙국은 베트남중앙노동당에 종속되어 당대회와 중앙정치부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남베트남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조직이었다. 1961년 1월 2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3회 회의에서 남부중앙국이 설립되었으며 남부중앙국의 비서는 당시의 베트남노동당의 비서를 맡고 있는 레주안(Lê Duân)이었다. 이후 남부중앙국 비서들은 명령에 따라 임무를 맡아 북베트남에서 파견된 간부들이었다. 남부중앙국은 북베트남의 지시를 직접 받았고 남베트남에서 전쟁 최고 지도권을 갖고 있었다. 1960년 9월 제3회 베트남노동당대회에서 민족해방전선 설립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 12월 민족해방전선이 설립된 것이 베트남노동당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군사 측면에서 임시혁명정부의 정규군은 남베트남해방군이라고 하였다. 남베트남해방군은 1961년에 탄생하여 남부중앙국의 영도하에서는 물론

---

<sup>143</sup> 베트남 제2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베트남노동당에게도 공식적. 비밀적 지도를 받아 활동하였다. 이미 1961년에 베트남민주공화국 정치부가 남베트남해방군은 베트남인민군의 한 부분이고 노동당의 정책강령을 준수해 남베트남을 해방시키는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베트남해방군은 주력군, 지방군, 유격대 등 세 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1963년부터 북에서 남으로 파견된 부대는 남베트남해방군에 종속되었다.

소재지 정부의 승인이 망명정부의 합법성 확보에 핵심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의 소재지 문제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사실 협정이 체결되고 2개월 후인 1973년 3월에 임시혁명정부 남베트남공화국은 빙프억(Bình Phước)성 록닝(Lộc Ninh)현에 위치해 있는 자오떼(Giao Té)집 터에 정부의 본부를 짓을 것을 결정하였다. 1973년 꽝찌(Quảng Trị)성을 점령한 후 깜로(Cam Lộ)에를 외교부 소재지로 정하게 되었다. 1969년 임시혁명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베트남공화국은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대해 조사하며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베트남공화국은 임시혁명정부의 소재지가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 국경에 세워질 것, 군사세력으로 전투를 벌이고 한 지역을 점령할 것, 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리회담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3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공화국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경에 정부가 세워지면 정치 활동이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당시 양측의 역량을 비교해보면 공산군이 군사세력으로 전투를 벌이고 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산군이 미국에 협정 요건을 양보해주고 대신에 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설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공화국은 파리회담의 조항을 실시하거나 포로를 송환해야 한다는 평계로 한 지역을 요구해서 소재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새로운 임시정부의 소재지로 떠이닝(Tây Ninh)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사이공정부의 주장이었다.<sup>144</sup> 과연 1973년 3월에 베트콩은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의 수도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떠이닝으로 진격하였다.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의 결성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였다. 이 조치는 결국 2개의 정부, 2개의 군대, 그리고 2개의 통치라는 개념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1973년 파리에서 평화협상의 합의에 정치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45</sup>

4자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낳지 못한 채 닉슨은 키신저에게 하노이와의 비밀 평화회담을 지시하였고, 하노이는 닉슨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1969년 8월 4일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와 하노이의 고위 협상가인 정치국원 레득토(Lê Đức Thọ)는 파리의 아파트에서 첫 번째 비밀회담을 시작하였다. 양측이 서로 공격하거나 양보 카드를 내밀면서 상대방의 의향을 타진하기를 수년 후 결국 1972년 10월 8일 파리에서 협정 초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사격을 중지하고, 미국이 완전히 철수하며, 미국포로를 석방하고 북쪽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응웬반티에우는 10월 8일의 협상을 전혀 몰랐다. 하노이는 수년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고민한 끝에 군사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을 분리시킬 것을 결정함으로써 평화가 깃들고 미국은 명예롭게 철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sup>146</sup>

---

<sup>144</sup> 베트남 제 2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sup>145</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443.

<sup>146</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543.

사이공정부는 1973년 1월 16일 미국에게서 최종협정내용 초안을 받았다. 사이공정부는 협정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사전협의 없이 미국과 하노이가 단독으로 협정문을 작성한 것에 강한 배신감과 불만을 토로하였다. 미국은 사이공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6주 안에 20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만약 사이공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협정에 임할 것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당시의 응웬반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 대통령에게 협약서명을 강요하면서 만약 하노이 당국이 협약을 어기면 미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티우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면 원조를 삭감하고 단독으로 처리할 것임을 경고하였다.<sup>147</sup> 사이공 정부는 며칠 후 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결국 파리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1954년 제네바협정을 통해 받은 교훈으로 북베트남은 파리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었다. 1979년 북베트남은 파리협정에 대하여 자평하기를 베트남 인민은 중국과 소련의 모든 압력을 물리치고 원칙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범죄행위에 통렬한 제재를 가하였다고 하였다.<sup>148</sup> 흥미로운 점은 1973년 이후 북한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접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데탕트 시기에 미중대화 이후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기대하였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익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에서 그대로 유지시키고자

---

<sup>147</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27-28.

<sup>148</sup>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p425.

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파리평화협정 체결 시 북베트남이 중국의 개입을 제거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했던 것은 북한의 접촉시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149</sup>

### 제 3 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파리협정에 따라 1973년 1월 28일 오전 8시부터 사격 중지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973년 1월 27일 오전 7시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베트남 정부가 DMZ 근처의 끄어비엣(Cửa Việt) 항구를 쏜살같이 빠르게 공격하였고 사격 중지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둔 다음날 1월 28일 오전 7시 58분에 끄어비엣(Cửa Việt) 항구를 점령하여 베트남 공화국의 국기를 꽂아 이제부터 전투를 중지하자고 하였다.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끄어비엣(Cửa Việt) 항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1월 31일 북베트남은 공격을 시작하였다.

미군 철수 이후 미국은 사이공정부를 계속 지원해주었으며 미국 상원은 남베트남에서 무기를 사용 및 정비하는 데에 든 비용이 3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하노이정부 자료에 따르면 협정 체결 후부터 1974년 7월 10일까지 미국은 남베트남에 전투기 694 대, 대포 800 문, 군함 204 대, 탱크 1,100 대를 반입하였다.<sup>150</sup> 파리협정 체결 전에 응웬반티에우(Nguyễn Văn Thiệu)는 “사격 중지 전 10 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무려

<sup>149</sup>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p59.

<sup>150</sup> 베트남 제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경찰 7,000 명을 파견하는 동시에 도시에서는 경찰 125,000 명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진압하였다. 1973년 1월 29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후에(Hué)에서 반정부 세력을 진압하여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 사이공정부가 사격 중지 전 10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수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협정 후 두 달 동안 사이공정부는 수많은 민중을 수용소에 가두었고 반정부 세력에게 강렬하게 탄압을 가하였다.<sup>151</sup>

1973년 파리협정을 맺은 후 2년 동안 정부는 그 전보다 훨씬 잔인해지고 있었다. 남베트남에서의 “플래그 전쟁”(War of the flags)에서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는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전력을 아낌없이 기울였다. 플래그 전쟁은 1973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남베트남 전역에서 계속되었으며,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 세력은 파리평화협정에 의해 합의된 휴전 이전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영토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정 체결 후 3주 동안만 양측은 3,000 여 건의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당시에 사이공정부 군대의 규모는 여전히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혁명정부가 점령한 지역을 포격하여 많은 양민을 죽이게 되었다. 사이공정부 정규군도 농촌 지역 전투에서 한 달 평균 1,000 명씩 전사하였다.

협정의 제3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남베트남의 양측은 현 위치에 군대를 유지하고 남베트남에 병력 및 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일절 금지해야 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협정 위반에 대한 사이공정권의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는 남베트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규군 300,000 명 외에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병사

---

<sup>151</sup> 베트남 제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270,000 명, 고문단 30,000 명 및 청년자원자 40,000 명을 남파하였다. 북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하여 남베트남 지역에 전차 1,000 대, 대포 600 대 및 탄약 수천 톤을 반입하며 협정의 제 15 조와 제 20 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영해를 침범하여 적발되었다고 비난하였다. 1973년 9월 1일에 중국함이 북베트남에 군사장비를 보급한 과정이 발각되었고, 1974년 6월 20일에 북베트남이 끄어비엣(Cửa Việt) 항구에 침입하여 침몰시켰다. 1975년까지 2년 동안 북베트남으로 인해 적대행위 10,684 건과 포격 43,118 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sup>152</sup>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남베트남 내륙 15번 도로 등 종적 및 횡적 도로망을 구축하고 남베트남 지역 지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제 15 조에 근거하여 베트남 통일은 강압 혹은 일방에 의한 병합이 아닌 남북 베트남 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거한 평화적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베트남 내부적 정치문제는 남베트남의 정치세력들 간에 합의해야 되었는데 응웬반티에우는 임시혁명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대화를 거부하였다. 1973년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라셀르 생 끌루(La Celle Saint Cloud) 회의에서 베트남공화국과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는 향후 파리협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4월 16일에 베트남공화국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다. 티에우는 1973년 12월 28일에 라셀르 생 끌루(La Celle Saint Cloud) 회의를 통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하였다. 1973년 8월 1일 사이공정부 수상은 “오늘날의 세계는 국제 법률이 아니라 힘에 의하여 돌아간다.

---

<sup>152</sup> 베트남 제 2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파리협정이 남베트남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되고 파리협정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선포하였다.<sup>153</sup>

## 제 4 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협상과정에서 하노이정부는 남베트남에 머무르는 북베트남 군대의 철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미국과 외국군만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철수를 거절하면서 외국군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에서 동시 철수하자고 제의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반전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빨리 물러나고 싶어서 결국 하노이정부에 양보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따라서 1973년 체결된 파리협정 체결 후 전투가 중지되었고, 베트남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야 하였다. 5조에 따르면 협정 서명 후 60일 내에 미국 외 모든 외국의 병력과 군사고문단, 군 관련 파견 인사, 그리고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부 군사고문단의 잔류를 원했고, 사이공 정부가 민간인 신분으로 잔류된 고문단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평화협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다.<sup>154</sup>

미국과 남베트남정부는 17도 경계선을 영토적 의미의 국경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17도 분할선을 넘어 병력, 무기, 탄약 등을 남베트남에 반입하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을 금할 것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남쪽 지역의 상당 부분을

---

<sup>153</sup> 베트남 제 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sup>154</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33.

민족해방전선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북베트남정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비무장지대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협정의 제3조항에 따라 남베트남 양측의 군대는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남베트남 양측은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앞 부분에서 설명하였듯 북베트남에 남파된 군대가 남베트남해방군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군대는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북으로 무조건 복귀할 필요는 없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협정 후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베트남군 300,000 명이 남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미국이 명예롭게 철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베트남 병력을 남베트남에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노이와 협상한 결과였다. 이 명예로운 평화로 인해 북베트남 병력은 남베트남 내 현재 위치 또는 17도선 근처에 잔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 북베트남은 계산대로라면 미군을 몰아낸 후 사이공정부를 내버려두어도 1~2년 후에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닉슨과 팜반동은 휴전 이후 병력 재배치 범위를 합의하였는데 응웬반티에우는 역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sup>155</sup> 북베트남군과 사이공정부에 항의한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에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1975년 사이공정부 몰락의 한 요소가 되었다.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남베트남의 양측(사이공정부 및 임시혁명정부)은 포로를 송환하겠다고 규정하였으나 베트남공화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포로를 17도 위의 북베트남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남베트남의 양측이 포로를 송환한다는 말은 남베트남 범위에서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가

---

<sup>155</sup>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 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p543.

상대방의 포로를 서로 석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사이공정부는 정치범 20 만여 명을 검거하고 있었으며 그중에 임시혁명정부 군인과 제3세력<sup>156</sup>이 포함되어 있었다. 1973년 4월 9일 응웬반티에우는 교황 바오로 6세(Paolo 6)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베트남에 일반죄수와 공산포로만 존재하고 일반죄수 21,000 명과 공산포로 5,000 여명 외의 정치범은 없다고 선포하였다.<sup>157</sup> 북베트남의 자료에 따르면 수많은 북베트남 포로가 실종되었다. 자당(Gia Định)수용소에 있는 정치범이 협정 체결 전에는 400 명이었는데 3월 20일에는 30 여 명에 불과하였다. 협정 체결 후 2 달 동안 서남부 지역 수용소의 포로를 18,000 명 정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실종되었다고 하였다. 푸꾸역(Phú Quốc)수용소에서만 14,500 명이 실종되었다.<sup>158</sup>

포로 석방 과정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다. 베트남 제 3 국립자료센테에서는 석방된 포로의 손편지를 다수 보관하고 있다. 민족해방전선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파리협정 후 사이공정부가 민족해방전선 측으로 보낸 정치인이나 학생들의 편지이었다. 그들은 남베트남정부나 민족해방전선을 지지하지 않고 남베트남정부의 정책에 항의한 반정부세력이었으며, 심지어 베트남공화국 군대에서 활동하기도 한 사람들이었다.

---

<sup>156</sup> 제3세력은 베트남공화국이나 임시혁명정부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투쟁한 남베트남의 한 정치세력이었다. 제3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트남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인 Dương Văn Minh이었다.

<sup>157</sup> 베트남 제3 국립자료센터 (베트남민주공화국 외교부, 1974.1),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òa, 1974.1)

<sup>158</sup> 베트남 제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협정 체결 후 그들은 가족에게도 가지 못하였고 사이공정부는 그들을 민족해방전선의 근거지인 록닝(Lộc Ninh)으로 보냈다.<sup>159</sup>

## 제 5 절 국제 기구의 역할

파리협정에도 평화기구를 설정하는 것이 명시되었다. 파리협정 16 조에 따라 공동군사위원회(Joint Military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공동군사위원회는 휴전을 감시하고 전쟁포로 확인 및 송환작업 등을 하며 협약서명 직후 활동을 개시하여 미군철수와 포로 송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60 일 이내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 **Chapter VI The Joint Military Commission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 **Article 16**

(a)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shall immediately designate representatives to form a Four-Party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 the task of ensuring joint action by the parties in implementing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8 조에 따르면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는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인도네시아의 군대로 구성되며, 새로운 정부가 선거로 구성되어 요청이 있을 때까지 휴전 감시와 외국군 철수, 무기유입방지, 선거 감시 역할을 하기로 했다. 1973년 10월 캐나다 측은 탈퇴하게 되고 빈 자리를 이란이 대체하였다. 19조에 따르면 평화협정은 서명 후 30일 이내에 평화협정을 인정하고,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보전, 그리고 베트남의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며, 인도차이나의 평화를

---

<sup>159</sup> 베트남 제 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보장해주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파리평화회의 참가국들을 대표해 미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과 국제통제 감독위원회의(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trol and Supervision) 소속 4개 국가, 유엔사무총장 그리고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의에 참가한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 보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 **Article 18**

- (a)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shall be established immediately.
- (b) Until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vided for in Article 19 makes definitive arrangement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will report to the four parties on matters concerning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Article 19**

The parties agree on the convening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in thir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o acknowledge the signed agreements; to guarantee the ending of the war, the maintenance of peace in Vietnam, the respect of the Vietnamese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 and the South Vietnames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contribute to and guarantee peace in Indo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on behalf of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will propose to the following parties that they participate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the United Kingdom, the four count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trol and Supervision,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gether with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aris Conference on Vietnam.

따라서 협약의 네 당사자는 조직구조와 활동의 절차와 수단, 그리고 비용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공동위원회는 상호협의와

만장일치에 입각하여 활동하며,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제 통제 및 감독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한다고 정하고 있다.<sup>160</sup> 미국은 국제 통제 및 감독위원회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북베트남정부는 공동군사위원회에 더 큰 비중을 두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7,000 내지 12,000 명 규모에 약 334 개 팀으로 국제 통제 및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150 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합의하였고, 이보다 약 3 배가 많은 3,300 명의 병력으로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7 개의 지역군사공동위를 구성한, 약 26 개의 연합군사팀을 각 주에 파견하기로 하였다.<sup>161</sup>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는 남베트남에서 양측이 위반한 행위를 조사할 책임을 맡게 되어 1973년 10월 소장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는 감시 업무 진행 시 안전을 보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제네바협정의 국제위원회처럼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는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나 베트남공화국의 협력을 받아야 관할 지역에 들어가 감시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73년 6월 28일에 캐나다와 인도네시아의 감시자 2명이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에 체포되었다. 사이공정부도 감독위원회 소재지 옆에 대포을 배치해놓았는데 형가리와 폴란드는 폭죽을 무력화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철수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이란은 사이공 측과 공산 측의 폭죽 공격을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62</sup> 국제 통제

<sup>160</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p33.

<sup>161</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sup>162</sup> 베트남 제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감독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1973년 10월 캐나다가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를 탈퇴한 이유는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가 협정의 규정을 집행하는데에 비협조하였기 때문이고, 평가리와 폴란드가 편파적으로 임무에 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평가리와 폴란드는 캐나다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사이공정부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하였다. 1974년 10월에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의 역할이 약해져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는 일방적으로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1954년 제네바협정의 국제위원회의 권한은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양측이 위반한 경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제재 방법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국제위원회는 무장으로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네바협정의 국제위원회의 실패 사례를 보고 사이공정부는 양측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제통제감독위원회에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가 감시 및 감독 권한 외에 군사력이 있어야 양측이 협정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sup>163</sup> 그러나 북베트남과 미국은 비밀리에 협상하였고, 사이공정부는 아무런 행사력과 결정력이 없었기에 이 제안은 파리협정 최종문에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역시 만정일치의 원칙하에 운영하기로 하였고, 병사들의 기본 비용은 참가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휴전 다음 날부터 시작된 수많은

---

<sup>163</sup> 베트남 제2 국립 자료 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위반사례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양 진영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다.<sup>164</sup> 아울러 파리협정 협정 체결 다음 날에 남베트남 정부는 DMZ 근처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남베트남정부가 북베트남정부에 의해 명백하게 공격을 받고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와 국제회의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고 북베트남정부와 임시혁명정부를 막을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1975년 4월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성공적으로 감행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남베트남의 프억롱(Phuoc Long)성에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격은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작전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말로만 항의하였다. 국제통제감독위원회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1975년 남베트남정부가 패망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 소결

1967년 평화협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파리협상이 결실을 보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필요하였다. 미국이 58,000여 명, 베트남이 100만여 명의 목숨을 잃었던 전쟁에서  $\frac{3}{4}$ 에 해당되는 기간을 전투 중지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과정이 차지하였다. 이 기간 중에도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

<sup>164</sup>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미국, 하노이정부, 사이공정부, 임시혁명정부 4 자협정으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에서 프랑스와 비엣민이 바오다이정부의 역할을 무시한 것처럼 미국과 하노이정부는 사이공정부를 배제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논의하였다. 사이공정부는 협정을 반대하였지만 미국이 원조를 차단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하노이정부가 협정을 위반하면 바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파리협정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파리협정은 남북 베트남 사이의 평화협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정전협정이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명예로운 철수를 위해 베트남 평화협상을 시작하였고 실질적인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 평화협상을 진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현재 베트남 측에서는 파리협정 체결이 항미전쟁에서의 전환점이며 인민의 18년의 항미구국항쟁과 5년의 외교투쟁의 큰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베트남 영토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dánh cho Mỹ cút) 사이공정부를 몰락시켜 (dánh cho Ngụy nhào) 남베트남을 해방시키는 데에 큰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것이다. 북베트남에게는 파리협정이 미국을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고 사이공정부를 무너뜨리는 토대를 마련한 계기였지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은 1973년 파리협정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제시한 평화협정은 외국군의 철군과 관련된 내용(제 2장)과 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베트남인민의 기본적 국민 권리(제 1장)”, “남베트남 국민의 자결권 행사” (제 4장)에서 유사하다.<sup>165</sup> 주목해야 할 점은 1973년 파리협정 체결

---

<sup>165</sup>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p70.

후 북한은 1974년 3월 15일부터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만 대화하자고 하였다. 1974년 3월 25일 북한 측은 협정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상하였다. (1) 미·북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으며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 (2)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국경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3) 남조선에 있는 외국 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 (4)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sup>166</sup> 특히 “베트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이 철거했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20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없고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상황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 없다고” 말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sup>167</sup>

파리협정은 미군과 외국군이 남베트남에서 철군해야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북베트남 군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미군을 최대한 빨리 철수하고 싶었던 미국은 북베트남 병력이 남베트남 내 현재 위치에 계속 유지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북베트남 병력과 사이공정부에 항의한 민족해방전선 세력의 존재는 1975년에 사이공정부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협정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통제감독위원회가

---

<sup>166</sup> 한국국방연구원. 1994. 「베트남 平和協定과 越南共產化 過程의 連繫性 分析」, 한국국방연구원, p37.

<sup>167</sup>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p46.

설립되었는데 군사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양측 간에 적대행위가 발생해도 군사적으로 간섭하기 어려웠다. 1954년 제네바협정의 국제위원회는 협정 지키기에 실패한 사례가 되었으며 1973년에 국제통제감독위원회 역시 파리협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 <표 1>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 비교

	한국정전협정	1953년 제네바협정	1973년 파리협정
협정 체결 기간	1951년 7월 10일 - 1953년 7월 27일	1954년 4월 26일 - 1954년 7월 21일	1968년 5월 13일 - 1973년 1월 27일
당사자 (협정에 서명자)	유엔군, 북한군 및 중국군. 한국은 정전협정을 반대하였다.	프랑스, 하노이정부. 바오다이정부는 협정을 반대하였다.	미국, 하노이정부, 사이공정부, 남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사이공정부는 여기로 파리협정에 사인하게 되었다.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제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적대행위의 재발을	제 1조는 분계선의 북쪽이 베트남인민군대의 통제하에 있고 분계선의 남쪽이	비무장지대 없이 군사분계선을 17 선으로 설정하였다. 17 도 분계선은

	<p>방지하고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쌍방이 2km 씩 후퇴하여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p>	<p>프랑스군의 통제하에 있으며, 쌍방이 5km 씩 후퇴하여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연합위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p>	<p>임시적이고 정치적이나 영토적인 경계선이 아니다.</p>
적대행위 중지	<p>제 2 조 제 12 항은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쌍방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베트남에서의 적대행위를 완전히</p>	<p>10 조는 “양측의 사령관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베트남에서의 적대행위를</p>	<p>협정을 체결한 다음 날인 1 월 28 일부터 사격 중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협정의 3 조항은 남베트남에서 모든 적대행위를</p>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인원과 무기 반입 금지	제 13 항은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된 군사인원과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제 16 항과 17 항은 베트남 경외로부터 증원된 군사인원 및 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7 항은 남베트남에 군사인원과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중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병력 집결 및 외국군 철수	외국인 철수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단, 3 개월 이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를 협의할 것이다.	5 항과 15 항에 따라 300 일 내에 프랑스군은 17 선 위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비엣밍은 집결해서 17 선의 북쪽으로 가야 한다. 프랑스군은 300 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제 3 항을 근거로 남베트남 양측의 군대는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5 조항은 협정 서명 후 60 일 내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모든 병력과 군사고문단, 군관련 파견 인사,

			그리고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거라고 규정하였다.
포로 송환	제 3 조 제 51 항에서 제 59 항까지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1949년 제네바 협약과 달리  ‘자유의지에 의한 송환’이라고 하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 21 항은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를 30일 이내에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3 조에서 남베트남의 양측이 1954년 제네바협정의 제 21 항 b 목을 기준으로 포로 송환을 실시하며 철군 날까지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일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2년 후 1956년 남북 총선거로 베트남 통일 문제를	남북 베트남 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거하여 통일이

	않았다. 단, 3 개월 이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협의할 것이다	해결하겠다고 규정하였다.	이루어지며 통일 기간은 남북 간의 협의로 정해진다.
국제 기구 역할	19 항부터  35 항까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설치와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36 항부터  제 50 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설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제네바협정을  지키기 위한  연합위원회 및  국제위원회의  설치와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6 항부터  19 항까지는  공동군사위원회 및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회담 초기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산군 측을 압박하여 회담의 결말이 쉽게 나도록 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파리협정에서 미국과 북베트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1972년 말, 협상을 빨리

끌내기 위하여 미국은 폭격으로 북베트남을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에서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군사의 우월성으로 적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미국의 군사원칙을 베트남전쟁에서 다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정전협정과 파리협정은 포로 교환, 외국군 철수 등 서로 다른 이슈로 회담이 지연되었는데 회담이 결렬될 때마다 전선에서 전투가 치열해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국정전협상의 전 과정은 군사작전과 긴밀히 결합되어 전개되었고, 파리협정의 경우에는 양측이 “싸우며 협상한다”는 전략을 취하며 군사적·외교적 측면에서 승리를 모색하였기에 회담이 지루하게 길어졌다. 제네바협정 경우에는 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비엣밍과 프랑스군의 사이에 디엔비엔푸 격전이 벌어졌다.

정전협정의 첫 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1951년 6월에 한국정부는 정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었으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정전협정의 양측의 협상전략과 지휘계통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였다.<sup>168</sup>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북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제네바협정의 경우에는 바오다이정부가 협상에서 배제당하였고, 사인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협정을 반대하였다. 제네바 협의는 소련과 중국, 프랑스, 영국 간에 합의된 것이었고 소련과 중국의 압력이 북베트남에 가해졌다고 한다. 파리협정은 4자 협상단체 간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미국과 하노이정부는 비밀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이공정부의 역할을 무시하였다. 사이공정부가

---

<sup>168</sup>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남베트남 원조를 차단하겠다고 협박하였으므로 결국 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정전협정 12 조항은 양측이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 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그러나 1960년대부터 남북한의 쌍방 보복공격, 서해교전,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었다. 제네바협정의 10 조는 “양측의 사령관, 한 쪽은 인도차이나 프랑스 연합군 사령관, 다른 한 쪽은 베트남인민군 사령관이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협정에 사인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사이공정부는 반공정책을 실시하고 반정부 세력들을 겸거하였다. 하노이정부는 1969년부터 남베트남에서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지 10년 후인 1964년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다시 발발하였다. 파리협정 3 조 c 항목은 남베트남의 당사국들의 정규와 비정규군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정지해야 한다( “The regular forces of all services and arms and the irregular forces of the parties in South Vietnam shall stop all offensive activities against each other...” )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1973년 파리협정을 맺은 후 2년 동안 정부는 그 전보다 훨씬 잔인해졌으며 “플래그 전쟁” (War of the flags)에서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 간에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1975년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위의 세 협정은 경외로부터 증원된 군사인원과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할 것 등을 규정하였지만 사문화되거나 협정을 위반하였다. 주목할 점은 파리평화협정에서도 군사 인원과 전쟁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과 북베트남은 모두 평화협정을 통하여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sup>169</sup> 사실 1973년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은 남베트남에 수많은 전쟁무기 및 전쟁설비를 이미 들여왔었다. 사이공정부는 현대적인 전쟁설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의 7항 (b)항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sup>170</sup> 한국의 경우에는 1957년에 유엔군 사령관에 의하여 13조(근)항이 무효화되었고 1958년 초 한국에 핵무기가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한편 북한은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통하여 전시에 군사 및 기타 원조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1954년 동남아시아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에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59년부터 하노이는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파리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치민로드를 통하여 하노이정부는 남베트남에 군사인원과 무기 및 탄약을 반입하였으며 협정을 위반하였다.

---

<sup>169</sup>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sup>170</sup> 베트남 제2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외국인 철수 문제에 관한 것은 한국정전협정에 언급되지 않았다. 공산 측은 외국군 철수가 정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미국은 외국군 철군 문제가 군사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며 정전이 성립된 이후에 토의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외국군 철수가 실현된다면 군사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없어 작전상 공산군 측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60 조는 “3 개월 이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철수”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왔다. 그러나 급이 높은 정치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군 철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군은 1958년 2월 19일에 북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임을 공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계속 주둔하고 있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300 일 내에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협정에 사인하지 않았음을 빌미로 1954년 후 남베트남에 군사인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파리협정 5조에 따르면 협정 서명 후 60 일 내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병력과 군사고문단, 군관련 파견 인사, 그리고 경찰병력을 모두 철수시킬 거라고 규정했다 (“Within sixty day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re will be a total withdrawal from South Vietnam of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technical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personnel associated with the pacification program, armaments, munitions, and war material of the United States and those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그러나 협정은 남베트남 양측의 군대를 현 위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북베트남에 남파된 군대가 북으로 무조건 가야 되지는 않았다.

한국정전협정은 1949년 제네바 협약과 달리 “자유의지에 의한 송환”이라고 하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한 송환”이라고 하는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포로들에 의한 포로소장 납치사건,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171</sup> 베트남의 경우에 1973년 남베트남의 양측(사이공정부 및 임시혁명정부)은 포로를 송환하겠다고 규정하였으나 베트남공화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포로를 17도선 위의 북베트남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남베트남의 양측이 포로를 송환한다는 말은 남베트남의 범위에서 사이공정부와 임시혁명정부가 상대방의 포로를 서로 석방함을 의미했다. 사이공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전쟁포로를 석방하면 남베트남에 있는 임시혁명정부의 군사적 힘이 강화되며 사이공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로를 일부러 잘못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켰던 경우가 있었다.

한국정전협정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단, 제4조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명시하였다. 협정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건의” 할 뿐이었으며 정치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서 양측은 모두 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중국군이 먼저 철수하는

---

<sup>171</sup> 박태균. 2005. 「[특집 - 역사용어 바로 쓰기] 정전협정인가 평화협정인가」, 역사비평, p.89.

조건으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이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남북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법을 마련하고 총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이었다.<sup>172</sup> 제네바 협정은 협정 체결 2년 후인 1956년 7월 20일에 남북 총선거로 베트남을 통일시키겠다고 협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공정부는 1956년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만약 하노이정부나 사이공정부가 총선거를 거부한다면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규약이 전혀 없었다. 당시 1956년의 베트남 상황은 1948년의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였다. 한쪽이 선거 실시를 거부할 경우 대체할 대책이 없었고, 당시 베트남 상황에서 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파리협정 제15조에서는 베트남 통일이 남북 베트남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거한 평화적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일 기간은 양측의 협의로 정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말은 형식적이었다. 통일에 관한 협정 조항이 모호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특히 1956년의 총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남북이 대화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믿을 수 없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 기구가 설립되었지만 권한이 부족하여 위의 세 사례에서 협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0년부터 군사정전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제네바협정에서 연합위원회는 활동하다가 1956년 4월 28일

---

<sup>172</sup> 김보영. 2015.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역사적 맥락과 의미」, 내일을 여는 역사 61, p151.

무산되었다. 국제위원회의 권한은 각방에게 권고에 불과하였다. 파리협정에서는 1974년 10월에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 통제 감독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국제기구는 협정의 각방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지 않아서 협정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었다.

## 제 6 장 결론

위의 세 협정을 서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세 협정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의 공통점은 명백한 승자가 없이 전쟁을 종결하였다는 것이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였던 것이 모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유엔군은 주로 공군 폭격으로, 공산군은 지상전선에서 "전술반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유리한 전략 전술적 위치에서 정전을 맞기 위해서는 정전회담이 종료될 때까지 고지쟁탈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네바협정의 경우에는 제네바회담이 임박하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비엣민이 전면공격을 개시하며 승리를 모색하였다는 것이 모순이었다. 파리협정의 경우에는 평화협상이 시작되자 전황이 오히려 치열해졌다.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이에 대규모 폭격과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세 협정의 공통점은 외국군이 한반도와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더 견디지 못하고 빠른 철수를 원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철수를 원하였으므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결국 한반도를 분단시키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북베트남은 1945년 자신이 세웠던 정부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며 관리할 지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사인하게 되었다. 9년간 베트남전에 임했던 프랑스가 전쟁을 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었다. 이어서 20년 후 1973년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북베트남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1973년 파리협정에 사인하였다.

종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한국정전협정과 제네바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종전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나오지 못하였다. 한국정전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하여 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네바회담에서 아무 결과도 이루지 못하였다. 제네바협정에서는 정치회담 개최할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총선거를 실시할 날만 정하였다.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베트남이 공식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였는데 남베트남은 거부하였으며, 결국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협정은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제법적 성격을 위반한 것이다.

1973년 파리협정은 평화협정이라고 지칭되었지만 협정 체결 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으며 그 협정 자체가 정전협정과 비슷했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이 명예로운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협정을 체결해도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 병력 철수문제에서 미국과 외국군만 남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했고 북베트남 병력은 남베트남 내 현 위치에 유지되었다. 북베트남군과 해방민족전선 세력이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당시 남베트남의 양측의 군사력이 불균형해졌다. 따라서 1975년 사이공정부는 몰락할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요컨대 그 당시 베트남 평화 협정은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양측 간에 우호관계를 도입하고 힘의 균형이 존재해야 하였으나 당시 남베트남정부는

미국에 의존하여 미군이 철수하면 빨리 무너질 상황이었다. 또한 석포교환 규정처럼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비엣콩을 북베트남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비엣콩이 남베트남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 1975년에 북베트남정부가 남베트남정부를 점령하지 않아도 남베트남정부가 몰락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

요컨대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시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문제의 적절한 해결법을 찾아낸 결과이지, 한국과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이 아니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타협하면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수많은 피해를 입은 강대국들이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협정을 조인해서 당사국들을 내버려둔 것이다.

이 연구는 당시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정전협정, 베트남파리협정을 체결하려면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제네바협정과 파리협정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진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에 가져야 되는 조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사료가 되면 좋겠다.

## 참고문헌

### 한국어 자료

#### 단행본

-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 박태균. 2015.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창비.
- 박태균. 2005. 『한국전쟁』, 책과 함께.
- 박영실. 2012.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 마이클 매클리어. 2002.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 민족통일연구원. 2001. 『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통일연구원 국내 학술회의, 제42차, 서울.
- 유인선. 2003.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 최병욱. 2008. 『최병욱 교수와 함께 읽는 베트남 근현대사』, 창비.
- Võ Nguyên Giáp. 2019. 강범두, 『1945-1954 베트남 독립전쟁 회고록 디엔비엔푸』, 이미지프레임, 길찾기.

#### 논문

- Do Thanh Thao Mien. 2019.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채. 1996. 「한반도 휴전 협정의 본질과 문제점」, 평화연구 5, p127.143.
-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 고유환. 1997.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곽태환 외

- 지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57-87.
-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초기 ‘개성사건’과 군사분계선 협상」, 군사, (67), p.303-334.
- 김보영. 2015.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역사적 맥락과 의미」, 내일을 여는 역사 61, p.144-156.
- 김명섭. 2013.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김정배. 2011. 「베트남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80, p.249-285.
- 박휘락. 2018.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연구 25(2), p.169-196.
- 박광득. 2014. 「제4장 정전협정 (1953)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14(2), p.97-133.
- 박태균. 2018.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역사비평.
- 박태균. 2010.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와 현실, p3-12.
- 박태균. 2003. 「[특집/정전협정 50년, 불안한 평화]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 박태균. 2005. 「[특집 - 역사용어 바로 쓰기] 정전협정인가 평화협정인가」, 역사비평, p.88-92.
- 송승종. 2019.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학회, p.235-

263.

- 신범철. 2017.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원, p.203-229.
- 신종태. 2016. 「미국의 베트남전쟁 평가 및 교훈」,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p.73-103.
- 노영순. 2007. 「분단 전기(1954~1963년) 베트남 통일문제」, 아세아연구 50(3), 2007.9, p7-38.
- 모종린. 2000. 「[특집] 보스니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사례연구-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Good Friday)” 평화협정」, 전략연구, p100-119.
- 문광건. 2000. 「한반도 정전협정의 본질과 평화조약의 필요성」.
- 문성목. 2011. 「평화협정개념과 주요사례 연구」, 통일부.
- 문정인. 1999.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 오홍국. 2015. 「간접접근전략으로 본 베트남통일전략 연구」, 베트남연구, 제13호.
- 윤덕민. 2000.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 윤정인. 2017. 「1953년 정전협정」, 통일법연구 3, p35-75.
- 이보미. 2014.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석사학위논문.
- 이영진 . 노동영. 2015. 「한국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학연구, 30 June 2015, Vol.26(1), pp.1-26
- 이찬수. 2018. 「‘베트남공화국’의 몰락: 지엠 정권의 ‘식민지적

민족주의' , '서구적 종교편향' , '하향적 반공주의' 를 중심으로」 , 담론 201, Vol.21(1).

정태욱. 2016.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 법학연구 19(2), pp.243-276.

조성렬. 2010.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우 전망」 , JPI 정책포럼, 2010:4, p.1-20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자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23(2), p.49-70.

최영종, 2007.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 국제관계연구 12 (1), p.5-32.

홍규덕. 2000. 「[특집]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 전략연구.

홍규덕 2016. 「베트남 전쟁이 한국군에 주는 교훈」 , 군사, (100), p.261-302.

홍관희. 2016. 「비운(悲運)의 월남폐망사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1)」 , 북한, p.64-71.

황수환. 2016. 「평화협정의 유형 분석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21(2), p.61-97.

현인택. 2003.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 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1)」 , 전략연구, p.120-139.

李庸中. 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Vol.4(1).

한국국방연구원. 1994. 「베트남 平和協定과 越南共產化 過程의 連繫性 分析」 , 한국국방연구원.

## 베트남어 자료

베트남 제 2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베트남 제 3 국립자료센터,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3

## 단행본

Cao Bảo Văn. 2017. “Tướng Cao Văn Khánh, Hồi ức lịch sử”, NXB Tri Thức, 2017.

까오바오번, 『까오반카잉 장군, 역사의 기억』, 지식 출판사.

Bộ Nội Vụ,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2. 2010. “Về đại thắng mùa xuân 1975 qua tài liệu của chính quyền Sài Gòn”, NXB Chính trị quốc gia Hà Nội, 2010. 내무부 제2국립자료센터, 『1975년 봄의 대승: 사이공정권의 사료 중심으로』, 하노이 국가정치 출판사.

“Chung một bóng cờ”, NXB Chính trị quốc gia Hà Nội, 1993. 『같은 국기』, 하노이 국가정치 출판사, 1993.

Hà Minh Hồng. 2010. “Mặt trận dân tộc giải phóng miền Nam Việt Nam, 1960-1977”, NXB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하민홍. 2010.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1960-1977』, 호치민시출판사.

Trung tâm lưu trữ quốc gia Việt Nam. 2017. “Liên Xô và Việt Nam trong những năm chiến tranh Đông Dương lần thứ nhất. Hội nghị Geneva năm 1954. Tuyển chọn văn kiện và tài liệu.” NXB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베트남 국립자료센터. 2017.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소련과 베트남. 1954년 제네바 회담. 문서와 자료 편집』, 정보와 매디어 출판사.

## 논문

Lưu Văn Quyết. 2016. “Tác động của hòa hoãn Trung – Mỹ đến chính sách viện trợ của Trung Quốc đối với cuộc kháng chiến của nhân dân Việt Nam trong và sau năm 1972”, Tạp chí phát

triển KH&CN, tập 19, số X4-2016. 르우반꾸엣. 2016. 「중-미 관계 완화는 1972년 이후 베트남인민의 항쟁에 중국의 지원 정책에 미친 영향」, 과학 및 기술 발전 잡지, 19호, X4-2016호.

VŨ Dương Ninh. 2004. “Hiệp định Geneva: Một nắc thang trên tiến trình giải phóng dân tộc”, Nghiên cứu lịch sử, No.338, 2004. 부쓰엉녕. 2004. 「제네바협정: 민족해방과정에 한 단계」, 역사연구, 338호, 2004.

### 신문

Báo Nhân dân, số 220, 3/9/1954. 로동신문, 220 호, 1954.9.3.

Báo Lao động, số 282, ngày 11/12/1954. 로동신문, 282 호, 1954.12.11.

### 영어자료

#### 단행본

Arthur J. Dommen. 2001. “The Indochinese Experiences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s: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Kevin Ruanke. 1994, “Anthony Eden, British diplomacy and the origins of The Geneva Conference of 1954”, The Historical Journal, 37, 1 (1994), pp. 153—172.

Miller, Edward Garvey. 2013. “Misalliance: Ngo Dinh Diem, the United States, and the Fate of South Vietna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Robert F. Randle. 1969. “Geneva 1954. The Settlement of the Indochinese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ltimore.

#### 논문

Buu Loc. 1952. “Aspects of the Vietnamese Problem”, Pacific Affairs, Vol. 25, No. 3 (Sep, 1952), pp. 235-247.

Chen Jian. 1993. "China and the First Indochian War 1950-54", *The China Quarterly* 1993, pp. 85-110.

Michael J. Green, "An even balance": Nixon and Kissinger's redefinition of containment in Asia, 1969-1975",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 9, p.323.

Nguyen Cao Dam. 1977. "The use of verbal influenc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Vietnam peace talks in Paris (1968-73). A study in purposive communi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Pierre Asselin. 2007. "Choosing Peace: Hanoi and the Geneva Agreement on Vietnam, 1954–1955",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007, Vol.9(2), pp.95-126.

Pierre Asselin.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11:2, pp. 155-195.

Park Tae Gyun. 2014. "What Happened Sixty Years Ago?: ROK-US Deep Distrust between President Rhee and Eisenhower", Volume 21, Number 1, 2014, pp. 37-53.

## 문서

한국정전협정,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 No. 4 (Nov., 1953), pp. 612-634 <http://www.jstor.org/stable/2704867>

제네바협정, 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Vietnam, July 20, 1954.  
<https://www.edu.acad/intrel/genevacc.htm>

파리평화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Paris, 27 January 1973)

[http://www.cvce.eu/obj/agreement\\_on\\_ending\\_the\\_war\\_and\\_restoring\\_peace\\_in\\_vietnam\\_paris\\_27\\_january\\_1973-en-656ccc0d-31ef-42a6-a3e9-ce5ee7d4fc80.html](http://www.cvce.eu/obj/agreement_on_ending_the_war_and_restoring_peace_in_vietnam_paris_27_january_1973-en-656ccc0d-31ef-42a6-a3e9-ce5ee7d4fc80.html)

<Abstract>

# **Comparis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1973 Paris Agreement**

NGUYEN KIM NG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u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Keyword:**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armistice agreement, peace agreements, division, unity

**Student Number:** 2017-21359